

제321회국회  
(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2월16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동물원법안
11.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4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5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60.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
61.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

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
1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5.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

166. 노동소송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6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6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70. 현안보고(철도노조 파업 관련)

###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4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남인순·박지원·배기운·부좌현·신경민·오영식·윤호중·윤후덕·이상직·조정식·진정희·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 14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영록·김춘진·노철래·박수현·김우남·이현재·김종태·윤재옥·이완구 의원 발의) ..... 14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남인순·박지원·배기운·부좌현·신경민·오영식·윤호중·윤후덕·이상직·조정식·진정희·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 14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류지영·이재영·권성동·정희수·손인춘·김정록·강석호·윤영식·하태경 의원 발의) ..... 14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정청래·이찬열·김춘진·장하나·민홍철·문병호·박수현·강동원·노영민·홍영표·남인순 의원 발의) ..... 14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윤석·노영민·최규성·강창일·배기운·박수현·김광진·이미경·김영환 의원 발의) ..... 14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김성곤·김한표·박창식·김동완·윤진식·서용교·김명연·최봉홍·민현주·유일호·윤명희·이한성 의원 발의) ..... 14
  10. 동물원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우윤근·배기운·박수현·은수미·추미애·최재성·홍종학·백군기·신계륜·정성호·김광진·전해철·한명숙·홍영표·김경협·정진후·강동원·김제남·심상정·최민희·박원석 의원 발의) ..... 14
  11.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희수·김세연·주영순·송영근·김한표·신의진·이종진·김을동·정문현·박창식·김태원·李宰榮·이자스민 의원 발의) ..... 15
  1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이만우·심학봉·이재영·민현주·주영순·박대출·이한성·남경필·정희수·염동열·한신교·주호영 의원 발의) ..... 15
  1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강기정·김경협·김세연·김승남·김우남·김재윤·김현·박남춘·박수현·백군기·우원식·원혜영·윤관석·은수미·이미경·이상직·장하나·진성준·최동익·추미애·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 15
  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윤관석·문병호·박남춘·이낙연·이윤석·강기정·장하나·한정애·신장용·김경협 의원 발의) ..... 15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안규백·유성엽·송호창·전병헌·부좌현·민홍철·한정애·노영민·박수현 의원 발의) ..... 1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낙연·유승우·서용교·김정록·박대동·이만우·정우택·박인숙·류지영·최봉홍·홍영표 의원 발의) ..... 15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이한성·

정희수 · 이만우 · 박인숙 · 유승우 · 유기준 · 김성곤 · 장윤석 · 정문현 · 심재철 · 강기윤 · 박대동 · 문정림 의원 발의)	15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서영교 · 김춘진 · 김영록 · 배기운 · 진성준 · 윤관석 · 조정식 · 주승용 · 우윤근 · 김기준 의원 발의)	15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홍영표 · 박민수 · 이원욱 · 김제남 · 박원석 · 서기호 · 윤후덕 · 김성주 · 김광진 의원 발의)	15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유승희 · 추미애 · 이낙연 · 이미경 · 윤호중 · 송호창 · 민홍철 · 김현 · 홍영표 · 진선미 · 강기정 · 최민희 · 부좌현 · 최동익 · 심상정 · 장하나 · 이채익 · 이해찬 · 문정림 · 은수미 의원 발의)	15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2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우남 · 최원식 · 김민기 · 정청래 · 문병호 · 민홍철 · 신장용 · 박남춘 · 백재현 · 김광진 · 박민수 의원 발의)	15
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문대성 · 이노근 · 하태경 · 강은희 · 이우현 · 신성범 · 윤명희 · 김재원 · 홍문표 · 주영순 · 김상민 · 최봉홍 · 송광호 · 정의화 의원 발의)	15
2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이종걸 · 배기운 · 박주선 · 조정식 · 도종환 · 유승희 · 강기정 · 김영록 · 노웅래 의원 발의)	15
2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진성준 · 노웅래 · 최민희 · 이상직 · 문병호 · 최동익 · 박지원 · 박남춘 · 김기식 의원 발의)	15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李宰榮 · 정의화 · 이운룡 · 김태원 · 윤진식 · 이에리사 · 이강후 · 이진복 의원 발의)	15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정문현 · 조명철 · 이만우 · 문정림 · 이한성 · 김성곤 · 고희선 · 최동익 · 윤재옥 · 정우택 의원 발의)	15
29.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성호 · 박창식 · 유승우 · 박상은 · 황영철 · 주영순 · 김정록 · 이상일 · 김재원 · 성완중 · 류지영 · 김성태 · 남경필 · 강은희 · 서용교 · 강석훈 · 김을동 · 이운룡 · 신경림 · 박민식 · 이자스민 의원 발의)	15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 · 유기준 · 이만우 · 손인춘 · 정병국 · 이한성 · 김기선 · 강은희 · 김한표 · 황주홍 의원 발의)	15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32.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오병윤 · 배기운 · 강기정 · 이낙연 · 임내현 · 이용섭 · 장병완 · 박혜자 · 박주선 의원 발의)	16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주영순 · 최봉홍 · 유승우 · 권성동 · 황영철 · 이완영 · 서용교 · 박민식 · 김기선 · 박인숙 의원 발의)	16
3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신경민 · 홍영표 · 우원식 · 이미경 · 한정애 · 이학영 · 김성주 · 박홍근 · 장하나 의원 발의)	16
3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서용교 · 이노근 · 문정림 · 이완영 · 이종훈 · 최봉홍 · 김용태 · 나성린 · 이만우 · 심재철 · 정우택 · 정희수 · 이강후 · 이명수 · 조명철 · 김정록 의원 발의)	16
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 · 전순옥 · 윤관석 · 안규백 · 김관영 · 배기운 · 박혜자 · 김윤덕 · 김성곤 · 김영록 · 김기식 · 최원식 · 유승희 · 최동익 · 정청래 · 전정희 · 김광진 · 유성엽 · 홍종학 · 강창일 · 전해철 의원 발의)	16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 · 강기정 · 한명숙 · 홍영표 · 우원식 · 김관영 · 박주선 · 도종환 · 박수현 · 이종진 · 이종걸 · 노영민 의원 발의)	16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 · 김성곤 · 김한표 · 박창식 · 김동	

- 완·윤진식·김명연·민현주·유일호·윤명희·이한성·손인춘 의원 발의) ..... 16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성호·박창식·유승우·박상은·황영철·주영순·김정록·이상일·김재원·성완중·류지영·김성태·이자스민·남경필·강은희·서용교·김을동·이운룡·신경림·박민식 의원 발의) ..... 16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최원식·신경민·윤후덕·백군기·주승용·노용래·강동원·김현미·박수현 의원 발의) ..... 16
41.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용교·장하나·우원식·김경협·최봉홍·은수미·심상정·한정애·한명숙·김성태·주영순·이목희·남인순·최동익·김용익·이종훈·김상민·류지영·권성동·유재중·이춘석 의원 발의) ..... 16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장하나·윤후덕·최원식·전정희·윤호중·김성곤·박지원·배기운·안규백·유성엽·추미애·이원욱·김경협·정호준·민홍철·이종걸 의원 발의) ..... 16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현미·박수현·은수미·이상민·장하나·주승용·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 16
4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낙연·이윤석·한명숙·이목희·강동원·우원식·이미경·우윤근·심상정 의원 발의) ..... 16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장하나·이미경·한명숙·유인태·홍영표·이종걸·배기운·배재정·부좌현·진성준·조정식·윤호중·이목희·한정애·윤후덕·정호준·박완주·최동익·남인순·은수미·심상정·인재근·김상희 의원 발의) ..... 16
4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배기운·홍영표·박남춘·윤후덕·김윤덕·박완주·박민수·민홍철·김춘진·심재권·남인순·노용래·김태년 의원 발의) ..... 16
4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부좌현·추미애·서용교·박남춘·강창일·장하나·김성곤·남인순·김기준·김광진·양승조·이석현·배재정·김우남·정호준·조정식·홍의락·진성준·김재윤·우원식·이용섭·홍영표·최동익 의원 발의) ..... 16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이진복·이만우·김무성·이채익·한선교·정성호·최봉홍·류지영·박인숙·김성태·조명철·이한성·김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3) ..... 16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김무성·윤관석·이자스민·김광진·이만우·윤호중·주영순·이채익·김성태·이진복·이완영·이재오·김한표·류지영·최봉홍·유일호·이종훈·하태경·이한성·강석호·이에리사·김장실 의원 발의)(의안번호 7320) ..... 16
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김세연·문정림·윤명희·정문헌·이재영·주영순·정희수·김을동·김동완·조원진·김태원·이운룡 의원 발의) ..... 17
5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추미애·홍영표·우원식·한정애·박수현·윤관석·진성준·박남춘·백군기·장하나·김경협·최동익·김관영·김현·원혜영·이상직·김승남·강기정·김우남·김세연·김성곤·김재윤 의원 발의) ..... 17
52.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이현승·문정림·윤상현·함진규·이명수·이우현·김한표·류지영·홍지만·이채익·이종진 의원 발의) ..... 17
53.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재윤·정호준·이미경·신학용·정청래·진선미·부좌현·홍의락·임수경·유승희·전병헌·윤관석·홍영표·조정식 의원 발의) ..... 17
5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정갑윤·윤명희·정문헌·박성호·이한성·황영철·송영근·김한표·문정림·이명수 의원 발의) ..... 17
5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장하나·이미경·한명숙·유인

태 · 홍영표 · 이종걸 · 배기운 · 배재정 · 부좌현 · 진성준 · 조정식 · 윤호중 · 이목희 · 한정애 · 윤후덕 · 정호준 · 박완주 · 최동익 · 남인순 · 은수미 · 심상정 · 인재근 · 김상희 의원 발의) ..... 17

57.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이우현 · 이노근 · 강은희 · 하태경 · 박성호 · 주영순 · 강기운 · 서용교 · 이운룡 · 홍지만 · 손인춘 · 김현숙 · 홍영표 · 김성태 · 강길부 의원 발의) ..... 17

5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우윤근 · 이춘석 · 박수현 · 부좌현 · 인재근 · 이인영 · 윤후덕 · 이학영 · 우원식 · 양승조 의원 발의) ..... 17

59.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17

60.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한명숙 · 최동익 · 진성준 · 윤관석 · 김재윤 · 우원식 · 이용섭 · 배기운 · 양승조 · 조정식 · 정세균 · 홍영표 · 백재현 · 박남춘 · 배재정 · 윤후덕 · 정진후 · 임수경 · 이원욱 · 장하나 · 김광진 · 정호준 · 박원석 · 은수미 · 한정애 의원 발의) ..... 17

61.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김승남 · 이미경 · 전병헌 · 김우남 · 유성엽 · 김태년 · 김영록 · 김윤덕 · 이상민 의원 발의) ..... 36

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6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서용교 · 최봉홍 · 주영순 · 이종훈 · 김진태 · 이학재 · 김기선 · 전하진 · 염동열 의원 발의) ..... 36

6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김성곤 · 김재윤 · 김춘진 · 배기운 · 배재정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장하나 · 최원식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 36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 · 주영순 · 이진복 · 이한성 · 김현숙 · 이만우 · 손인춘 · 김을동 · 송영근 · 윤명희 의원 발의) ..... 36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 · 이한성 · 권은희 · 손인춘 · 이학재 · 정의화 · 李宰榮 · 유승민 · 유재중 · 김상민 의원 발의) ..... 36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부좌현 · 배재정 · 우원식 · 최민희 · 정성호 · 유성엽 · 이미경 · 윤호중 · 김재윤 · 최원식 · 김기준 · 이상직 · 문병호 · 최동익 · 김광진 · 윤관석 · 윤후덕 · 진성준 · 전순옥 · 이인영 · 한정애 · 신경민 · 박지원 의원 발의) ..... 36

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김태원 · 이강후 · 정갑윤 · 김세연 · 강은희 · 이완영 · 류지영 · 박창식 · 서용교 · 강기운 · 황영철 · 주영순 · 강길부 · 민현주 · 이주영 · 조명철 · 정문헌 의원 발의) ..... 36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남인순 · 배재정 · 서영교 · 신경민 · 심상정 · 이미경 · 장하나 · 최민희 · 한명숙 의원 발의) ..... 36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유승희 · 김재연 · 이춘석 · 장하나 · 박홍근 · 이원욱 · 안규백 · 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379) ..... 36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노웅래 · 박홍근 · 배기운 · 이원욱 · 이학영 · 이해찬 · 이춘석 · 전순옥 · 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9) ..... 36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이명수 · 이한성 · 정문헌 · 최봉홍 · 정수성 · 김성찬 · 유승우 · 박인숙 · 김상민 의원 발의) ..... 36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배기운 · 유성엽 · 김기준 · 부좌현 · 이미경 · 김광진 · 이찬열 · 김성곤 · 장병완 · 박민수 · 정호준 의원 발의) ..... 36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남인순 · 박지원 · 배기운 · 부좌현 · 신경민 · 오영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직 · 조정식 · 전정희 · 최동익 · 한정애 의원 발의) ..... 36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진성준 · 안규백 · 이상직 · 최민희 · 오영식 · 유승희 · 윤호중 · 전정희 · 박수현 의원 발의) ..... 36

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은수미 · 장하나 · 배기운 · 안민석 · 추미



- 에·이낙연·전정희·유성엽·안규백·이자스민·원혜영·김광진·유승우 의원 발의) ..... 37
7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유성엽·신동우·이만우·송영근·조명철·강동원·이재영·김동완·주호영 의원 발의) ..... 37
7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인재근·배재정·전정희·전병헌·이인영·노웅래·부좌현·이상직·홍종학·김제남·문병호·유은혜 의원 발의) ..... 37
7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헌·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 37
8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남인순·박지원·배기운·부좌현·신경민·오영식·윤호중·윤후덕·이상직·조정식·전정희·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 37
8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길정우·김현숙·윤명희·이운룡·이만우·주영순·민병주·류지영·김한표·김광진·추미애·은수미 의원 발의) ..... 37
8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헌·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 37
8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제남·도종환·박원석·박홍근·배재정·서기호·유기홍·장하나·정진후 의원 발의) ..... 37
8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유승우·김종태·안규백·심학봉·권은희·송영근·김상훈·김태환·이노근·이자스민 의원 발의) ..... 37
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이인영·박민수·김성주·유성엽·김관영·김영록·김윤덕·배기운·윤명희 의원 발의) ..... 37
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헌·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 37
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신경민·배재정·박홍근·정청래·김한길·추미애·유승희·안규백·서영교·우원식·홍의락·김상희 의원 발의) ..... 37
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태원·이강후·정갑윤·김세연·강은희·이완영·류지영·박창식·서용교·강기윤·황영철·주영순·강길부·민현주·이주영·조명철·정문헌 의원 발의) ..... 37
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정훈·이만우·서용교·김재원·박창식·하태경·이한성·유승우·김기현·김광진·김태원·강은희·김기선·이에리사 의원 발의) ..... 37
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기운·배재정·부좌현·심상정·장하나·최민희·추미애·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2) ..... 37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장하나·신경민·배재정·이미경·한명숙·김경협·심상정·홍영표·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9) ..... 37
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주영순·서용교·이종훈·김상민·박성효·유승우·민현주·김정록·이재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4) ..... 38
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주영순·정문헌·여상규·정희수·

	이운룡 · 정갑윤 · 박창식 · 안효대 · 김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52) .....	38
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박남춘 · 최재성 · 배기운 · 정성호 · 최동익 · 김승남 · 김우남 · 윤호중 · 이낙연 · 김성곤 · 이상민 · 황주홍 의원 발의) .....	38
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유성엽 · 김우남 · 우원식 · 김승남 · 윤호중 · 김기준 · 민홍철 · 송호창 · 유은혜 · 진성준 · 정호준 · 박홍근 · 박민수 · 최동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9) .....	38
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유승희 · 김재연 · 이춘석 · 장하나 · 박홍근 · 이원욱 · 안규백 · 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1) .....	38
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박홍근 · 배기운 · 이춘석 · 이해찬 · 서영교 · 노웅래 · 문병호 · 이원욱 · 이학영 · 전순옥 · 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791) .....	38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 · 안홍준 · 김정록 · 정희수 · 전순옥 · 이만우 · 김현숙 · 유승민 · 윤후덕 · 강석훈 의원 발의) .....	38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김성곤 · 김승남 · 김용익 · 김윤덕 · 김춘진 · 박남춘 · 박수현 · 박주선 · 박지원 · 배기운 · 배재정 · 신경민 · 심상정 · 안규백 · 원혜영 · 유은혜 · 윤관석 · 윤후덕 · 이미경 · 이상직 · 이인영 · 이찬열 · 이해찬 · 장하나 · 전순옥 · 정성호 · 최봉홍 · 한명숙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	38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김성주 · 김현미 · 남인순 · 박홍근 · 배기운 · 신경민 · 우원식 · 유성엽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직 · 이학영 · 장하나 · 전순옥 · 추미애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	38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 · 남경필 · 주영순 · 민현주 · 김상민 · 서용교 · 이완영 · 이이재 · 전하진 · 강석훈 의원 발의) .....	38
10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전순옥 · 여상규 · 권은희 · 홍의락 · 노영민 · 홍지만 · 이철우 · 정갑윤 · 김기선 의원 발의) .....	38
1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박수현 · 김광진 · 이상민 · 주영순 · 이만우 · 윤호중 · 배기운 · 이미경 · 홍영표 · 박남춘 · 윤관석 · 서용교 · 김춘진 · 김재윤 · 강창일 · 은수미 · 전순옥 · 김성태 · 김성곤 의원 발의) .....	38
10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남인순 · 박지원 · 배기운 · 부좌현 · 신경민 · 오영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직 · 조정식 · 전정희 · 최동익 · 한정애 의원 발의) .....	38
10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 배재정 · 이찬열 · 박홍근 · 김용익 · 전병헌 · 우윤근 · 김현미 · 배기운 · 박수현 · 윤후덕 · 박범계 · 이춘석 · 문병호 · 한정애 · 서영교 · 민홍철 · 김제남 · 한명숙 · 박영선 · 진성준 · 신경민 · 이미경 · 서기호 · 김성주 · 전해철 · 강동원 · 남인순 · 박지원 · 유은혜 · 최재천 · 유성엽 · 이인영 · 유인태 · 정진후 · 박주선 의원 발의) .....	38
10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배기운 · 문병호 · 민홍철 · 부좌현 · 심상정 · 윤관석 · 윤후덕 · 이미경 · 전순옥 · 한명숙 · 한정애 의원 발의) .....	38
1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우원식 · 홍중학 · 최원식 · 최재성 · 윤관석 · 한정애 · 이춘석 · 박지원 · 박주선 · 이미경 의원 발의) .....	38
1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김태원 · 이강후 · 정갑윤 · 김세연 · 강은희 · 이완영 · 류지영 · 박창식 · 서용교 · 강기운 · 황영철 · 주영순 · 강길부 · 민현주 · 이주영 · 조명철 · 정문헌 의원 발의) .....	38
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김관영 · 배기운 · 배재정 · 부좌현 · 심상정 · 장하나 · 최민희 · 추미애 · 한명숙 · 홍영표 의원 발의) .....	39

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김경협·김용익·김재윤·박남춘·박민수·배기운·부좌현·안민석·우원식·유승희·유은혜·이인영·장하나·전순옥·정호준·추미애·한명숙·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 39
1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윤관석·유은혜·진성준·원혜영·배기운·박남춘·박민수·신경민·윤후덕 의원 발의) ..... 39
1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유승희·김재연·이춘석·장하나·박홍근·이원욱·안규백·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0) ..... 39
1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박홍근·배기운·이춘석·이해찬·서영교·노웅래·이원욱·이학영·전순옥·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7) ..... 39
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이한성·이현재·문대성·홍지만·안홍준·남경필·유재중·윤명희·이재영·신경립·류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0) ..... 39
1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이현재·이진복·류지영·송영근·이한성·홍문표·유재중·손인춘·남경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6907) ..... 39
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낙연·배기운·이종걸·윤후덕·장하나·전순옥·김재윤·박지원·김성곤·최민희·유성엽·박남춘 의원 발의) ..... 39
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장하나·이자스민·최원식·전정희·윤관석·한정애·윤희중·이미경·인재근·백재현·전순옥·은수미·진선미·김상희 의원 발의) ..... 39
1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갑윤·류지영·정의화·이현재·주영순·박창식·정희수·윤명희·유승우·이만우 의원 발의) ..... 39
11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현·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 39
12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김제남·최민희·최동익·이미경·김우남·김춘진·유승희·송호창·배기운 의원 발의) ..... 39
121.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배기운·홍종학·윤후덕·김기준·이상직·인재근·한정애·유성엽·이해찬·박민수·남인순 의원 발의) ..... 39
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현·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 39
12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김성곤·김재윤·김춘진·배기운·배재정·원혜영·윤관석·윤희중·장하나·최원식·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 39
1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윤후덕·배기운·김우남·김제남·유성엽·김춘진·이미경·백재현·홍영표 의원 발의) ..... 39
1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박혜자·심상정·김영환·배기운·부좌현·유승희·박지원·최민희·이상직·유성엽·전정희·윤후덕·최원식·문병호·문재인·김재윤·김광진 의원 발의) ..... 40

- 126. 산업안전보건법칙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김제남 · 서기호 · 박원석 · 강동원 · 정진후 · 김경협 · 장하나 · 남인순 · 이미경 의원 발의) ..... 40
- 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우윤근 · 최규성 · 강창일 · 부좌현 · 인재근 · 오영식 · 윤후덕 · 홍의락 · 우원식 의원 발의) ..... 40
- 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우남 · 최원식 · 정청래 · 문병호 · 민홍철 · 신장용 · 박남춘 · 백재현 · 김민기 의원 발의) ..... 40
- 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배기운 · 윤관석 · 전순옥 · 민홍철 · 이상민 · 유성엽 · 이상직 · 이학영 · 이인영 의원 발의) ..... 40
- 1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이만우 · 심학봉 · 이재영 · 민현주 · 주영순 · 박대출 · 남경필 · 정희수 · 염동열 · 한선교 · 주호영 · 이한성 의원 발의) ..... 40
- 1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김제남 · 서기호 · 박원석 · 강동원 · 정진후 · 김경협 · 장하나 · 남인순 · 이미경 의원 발의) ..... 40
- 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경협 · 박원석 · 진성준 · 심상정 · 배기운 · 이미경 · 한명숙 · 서영교 · 한정애 · 전순옥 · 조정식 · 홍영표 · 김기준 · 윤호중 · 배재정 · 은수미 의원 발의) ..... 40
- 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 · 안홍준 · 정문현 · 김세연 · 전하진 · 주영순 · 유재중 · 김정록 · 류지영 · 김장실 의원 발의) ..... 40
- 1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안덕수 · 김정록 · 최봉홍 · 이완영 · 이노근 · 김용태 · 정희수 · 류지영 · 김상민 · 신경림 의원 발의) ..... 40
- 1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이현승 · 문정림 · 윤상현 · 함진규 · 이명수 · 이우현 · 김한표 · 류지영 · 홍지만 · 이채익 · 이종진 의원 발의) ..... 40
- 1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최재성 · 노철래 · 김희선 · 김도읍 · 권성동 · 이춘석 · 김춘진 · 박범계 · 한기호 · 유기준 · 유승우 · 경대수 · 류지영 · 조명철 · 김성태 · 황영철 · 이학재 · 문정림 의원 발의) ..... 40
- 1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주승용 · 신경민 · 이학영 · 조정식 · 최규성 · 이미경 · 윤호중 · 배기운 · 전순옥 의원 발의) ..... 40
- 1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 · 장하나 · 이학영 · 김성주 · 배기운 · 한명숙 · 문정림 · 안민석 · 김광진 · 이미경 의원 발의) ..... 40
- 1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김광진 · 김기준 · 김재운 · 문병호 · 배재정 · 부좌현 · 신경민 · 우원식 · 유성엽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낙연 · 이미경 · 이인영 · 전순옥 · 진성준 · 최동익 · 최민희 · 최원식 의원 발의) ..... 40
- 1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 · 남경필 · 김성태 · 이이재 · 윤영석 · 김상민 · 최봉홍 · 주영순 · 민현주 · 서용교 · 김경협 · 심상정 · 이완영 의원 발의) ..... 40
- 1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은수미 · 장하나 · 배기운 · 안민석 · 추미애 · 이낙연 · 전정희 · 유성엽 · 이자스민 · 원혜영 · 김광진 · 유승우 의원 발의) ..... 40
- 1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김광진 · 김경협 · 김기식 · 김우남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직 · 전순옥 · 한정애 의원 발의) ..... 40
- 1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주영순 · 이종훈 · 최봉홍 · 유기준 · 유승우 · 김성찬 · 이만우 · 김도읍 · 김무성 · 김상민 · 김성태 · 민현주 · 류지영 의원 발의) ..... 40
- 14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한성 · 이만우 · 조명철 · 문정림 · 권성동 · 심학봉 · 강석호 · 주영순 · 유승우 · 경대수 · 황영철 · 김무성 의원 발의) ..... 41
- 14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서용교 · 최봉홍 · 주영순 · 이종훈 · 김진태 · 이학재 · 김기선 · 전하진 · 염동열 의원 발의) ..... 41

1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이만우 · 조명철 · 박인숙 · 민홍철 · 정문헌 · 이한성 · 김상민 · 신동우 · 윤재옥 · 김한표 · 이우현 · 문정림 · 박상은 · 이노근 의원 발의) ..... 41
1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이윤석 · 안규백 · 서영교 · 김우남 · 김경협 · 유기홍 · 이원욱 · 이상직 · 최동익 · 정성호 · 한정애 · 박지원 · 박남춘 · 강창일 의원 발의) ..... 41
148.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김재윤 · 김현미 · 남인순 · 박홍근 · 배기운 · 배재정 · 신경민 · 우원식 · 유성엽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직 · 이학영 · 장하나 · 전순옥 · 추미애 · 홍영표 의원 발의) ..... 41
1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박수현 · 이미경 · 백재현 · 안규백 · 노영민 · 윤후덕 · 최민희 · 박주선 · 배재정 · 변재일 · 이윤석 의원 발의) ..... 41
15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황영철 · 이주영 · 이한성 · 김을동 · 김태원 · 김기선 · 민현주 · 이완영 · 유승우 · 이종훈 · 이에리사 의원 발의) ..... 41
15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김성곤 · 김승남 · 김용익 · 김윤덕 · 김춘진 · 박남춘 · 박수현 · 박주선 · 박지원 · 배기운 · 배재정 · 신경민 · 심상정 · 안규백 · 원혜영 · 유은혜 · 윤관석 · 윤후덕 · 이미경 · 이상직 · 이인영 · 이찬열 · 이해찬 · 장하나 · 전순옥 · 정성호 · 최봉홍 · 한명숙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 41
15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진성준 · 안규백 · 이상직 · 최민희 · 오영식 · 유승희 · 윤호중 · 전정희 · 박수현 의원 발의) ..... 41
15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1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김춘진 · 문희상 · 박기춘 · 박수현 · 박홍근 · 배기운 · 안규백 · 양승조 · 추미애 의원 발의) ..... 41
1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윤석 · 노영민 · 최규성 · 강창일 · 배기운 · 박수현 · 김광진 · 이춘석 · 김성곤 · 이미경 · 김영환 의원 발의) ..... 41
1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김관영 · 오영식 · 김우남 · 김제남 · 배기운 · 서기호 · 유성엽 · 이미경 · 김광진 · 백재현 의원 발의) ..... 41
1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김승남 · 이미경 · 전병헌 · 김우남 · 유성엽 · 김태년 · 김영록 · 김윤덕 · 이상민 의원 발의) ..... 41
15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이종걸 · 문병호 · 배재정 · 최동익 · 김동철 · 박주선 · 이상민 · 한정애 · 강동원 의원 발의) ..... 41
1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을동 · 황영철 · 김태원 · 조원진 · 김동완 · 김기선 · 민현주 · 유승우 · 박창식 · 이종훈 · 김성태 · 이만우 · 이한성 의원 발의) ..... 41
1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 · 배기운 · 김영록 · 이낙연 · 박지원 · 안규백 · 윤호중 · 신장용 · 박남춘 · 장하나 · 이상직 · 민홍철 · 남인순 · 김성곤 · 강창일 의원 발의) ..... 41
16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 · 이종걸 · 배기운 · 최민희 · 인재근 · 민홍철 · 이인영 · 박주선 · 우원식 · 정청래 · 이상민 · 유성엽 의원 발의) ..... 41
16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 배재정 · 이찬열 · 박홍근 · 김용익 · 전병헌 · 우윤근 · 김현미 · 배기운 · 박수현 · 윤후덕 · 박범계 · 이춘석 · 문병호 · 한정애 · 서영교 · 민홍철 · 김제남 · 한명숙 · 박영선 · 진성준 · 신경민 · 이미경 · 서기호 · 김성주 · 전해철 · 강동원 · 남인순 · 박지원 · 유은혜 · 최재천 · 유성엽 · 이인영 · 유인태 · 정진후 · 박주선 의원 발의) ..... 41
16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배기운 · 김민기 · 윤관석 · 전순옥 · 민홍철 · 이상민 · 유성엽 · 이상직 · 이학영 · 이인영 의원 발의) ..... 42
1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배기운 · 문병호 · 민홍철 · 부좌현 · 심상정 · 윤관석 · 윤후덕 · 이미경 · 전순옥 · 한명숙 · 한정애 의원 발의) ..... 42
165.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용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2

166. 노동소송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2  
 16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2  
 16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2  
 1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2  
 170. 현안보고(철도노조 파업 관련) ..... 50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십시오, 인사.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있긴 하지만 서로 협력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인사도 잘하고 협력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정해서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소관이 60건, 고용노동부 소관이 109건 등 총 169건입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환경부 소관 의안 60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오후에 고용노동부 소관 109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 60항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동 상정기간이 경과된 법률안은 모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위원 간의 합의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4건의 의견 제시의 건만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남인순 · 박지원 · 배기운 · 부좌현 · 신경민 · 오영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직 · 조정식 · 전정희 · 최동익 · 한정애 의원 발의)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김영록 · 김춘진 · 노철래 · 박수현 · 김우남 · 이현재 · 김종태 · 윤재옥 · 이완구 의원 발의)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남인순 · 박지원 · 배기운 · 부좌현 · 신경민 · 오영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직 · 조정식 · 전정희 · 최동익 · 한정애 의원 발의)
-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류지영 · 이재영 · 권성동 · 정희수 · 손인춘 · 김정록 · 강석호 · 윤영석 · 하태경 의원 발의)
-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 · 정청래 · 이찬열 · 김춘진 · 장하나 · 민홍철 · 문병호 · 박수현 · 강동원 · 노영민 · 홍영표 · 남인순 의원 발의)
-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윤석 · 노영민 · 최규성 · 강창일 · 배기운 · 박수현 · 김광진 · 이미경 · 김영환 의원 발의)
-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 · 김성곤 · 김한표 · 박창식 · 김동완 · 윤진식 · 서용교 · 김명연 · 최봉홍 · 민현주 · 유일호 · 윤명희 · 이한성 의원 발의)
- 10. 동물원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우윤근 · 배기운 · 박수현 · 은수미 · 추미애 · 최재성 · 홍종학 · 백근기 · 신계륜 · 정성호 · 김광진 · 전해철 · 한명숙 · 홍영표 · 김경협 · 정진후 · 강동원 · 김제남 · 심상정 · 최민희 · 박원석 의원 발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11.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희수·김세연·주영순·송영근·김한표·신의진·이종진·김을동·정문현·박창식·김태원·李宰榮·이자스민 의원 발의)
1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이만우·심학봉·이재영·민현주·주영순·박대출·이한성·남경필·정희수·염동열·한선교·주호영 의원 발의)
1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강기정·김경협·김세연·김승남·김우남·김재윤·김현·박남춘·박수현·백군기·우원식·원혜영·윤관석·은수미·이미경·이상직·장하나·진성준·최동익·추미애·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윤관석·문병호·박남춘·이낙연·이윤석·강기정·장하나·한정애·신장용·김경협 의원 발의)
16.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안규백·유성엽·송호창·전병헌·부좌현·민홍철·한정애·노영민·박수현 의원 발의)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낙연·유승우·서용교·김정록·박대동·이만우·정우택·박인숙·류지영·최봉홍·홍영표 의원 발의)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이한성·정희수·이만우·박인숙·유승우·유기준·김성곤·장윤석·정문현·심재철·강기윤·박대동·문정림 의원 발의)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서영교·김춘진·김영록·배기운·진성준·윤관석·조정식·주승용·우윤근·김기준 의원 발의)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홍영표·박민수·이원욱·김제남·박원석·서기호·윤후덕·김성주·김광진 의원 발의)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유승희·추미애·이낙연·이미경·윤호중·송호창·민홍철·김현·홍영표·진선미·강기정·최민희·부좌현·최동익·심상정·장하나·이채익·이해찬·문정림·은수미 의원 발의)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우남·최원식·김민기·정청래·문병호·민홍철·신장용·박남춘·백재현·김광진·박민수 의원 발의)
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문대성·이노근·하태경·강은희·이우현·신성범·윤명희·김재원·홍문표·주영순·김상민·최봉홍·송광호·정의화 의원 발의)
2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종걸·배기운·박주선·조정식·도종환·유승희·강기정·김영록·노웅래 의원 발의)
2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진성준·노웅래·최민희·이상직·문병호·최동익·박지원·박남춘·김기식 의원 발의)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李宰榮·정의화·이윤룡·김태원·윤진식·이에리사·이강후·이진복 의원 발의)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정문현·조명철·이만우·문정림·이한성·김성곤·고희선·최동익·윤재옥·정우택 의원 발의)
29.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성호·박창식·유승우·박상은·황영철·주영순·김정록·이상일·김재원·성완중·류지영·김성태·남경필·강은희·서용교·강석훈·김을동·이윤룡·신경림·박민식·이자스민 의원 발의)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유기준·이만우·손인춘·정병국·이한성·김기선·강은희·김한표·황주홍 의원 발의)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오병윤 · 배기운 · 강기정 · 이낙연 · 임내현 · 이용섭 · 장병완 · 박혜자 · 박주선 의원 발의)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주영순 · 최봉홍 · 유승우 · 권성동 · 황영철 · 이완영 · 서용교 · 박민식 · 김기선 · 박인숙 의원 발의)
3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신경민 · 홍영표 · 우원식 · 이미경 · 한정애 · 이학영 · 김성주 · 박홍근 · 장하나 의원 발의)
3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서용교 · 이노근 · 문정림 · 이완영 · 이종훈 · 최봉홍 · 김용태 · 나성린 · 이만우 · 심재철 · 정우택 · 정희수 · 이강후 · 이명수 · 조명철 · 김정록 의원 발의)
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 · 전순옥 · 윤관석 · 안규백 · 김관영 · 배기운 · 박혜자 · 김윤덕 · 김성곤 · 김영록 · 김기식 · 최원식 · 유승희 · 최동익 · 정청래 · 전정희 · 김광진 · 유성엽 · 홍종학 · 강창일 · 전해철 의원 발의)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 · 강기정 · 한명숙 · 홍영표 · 우원식 · 김관영 · 박주선 · 도종환 · 박수현 · 이종진 · 이종걸 · 노영민 의원 발의)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 · 김성곤 · 김한표 · 박창식 · 김동완 · 윤진식 · 김명연 · 민현주 · 유일호 · 윤명희 · 이한성 · 손인춘 의원 발의)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성호 · 박창식 · 유승우 · 박상은 · 황영철 · 주영순 · 김정록 · 이상일 · 김재원 · 성완중 · 류지영 · 김성태 · 이자스민 · 남경필 · 강은희 · 서용교 · 김을동 · 이운룡 · 신경림 · 박민식 의원 발의)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최원식 · 신경민 · 윤후덕 · 백군기 · 주승용 · 노웅래 · 강동원 · 김현미 · 박수현 의원 발의)
41.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서용교 · 장하나 · 우원식 · 김경협 · 최봉홍 · 은수미 · 심상정 · 한정애 · 한명숙 · 김성태 · 주영순 · 이목희 · 남인순 · 최동익 · 김용익 · 이종훈 · 김상민 · 류지영 · 권성동 · 유재중 · 이춘석 의원 발의)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장하나 · 윤후덕 · 최원식 · 전정희 · 윤호중 · 김성곤 · 박지원 · 배기운 · 안규백 · 유성엽 · 추미애 · 이원욱 · 김경협 · 정호준 · 민홍철 · 이종걸 의원 발의)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김현미 · 박수현 · 은수미 · 이상민 · 장하나 · 주승용 · 한명숙 · 홍영표 의원 발의)
4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낙연 · 이윤석 · 한명숙 · 이목희 · 강동원 · 우원식 · 이미경 · 우윤근 · 심상정 의원 발의)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장하나 · 이미경 · 한명숙 · 유인태 · 홍영표 · 이종걸 · 배기운 · 배재정 · 부좌현 · 진성준 · 조정식 · 윤호중 · 이목희 · 한정애 · 윤후덕 · 정호준 · 박완주 · 최동익 · 남인순 · 은수미 · 심상정 · 인재근 · 김상희 의원 발의)
4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배기운 · 홍영표 · 박남춘 · 윤후덕 · 김윤덕 · 박완주 · 박민수 · 민홍철 · 김춘진 · 심재권 · 남인순 · 노웅래 · 김태년 의원 발의)
4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김경협 · 부좌현 · 추미애 · 서영교 · 박남춘 · 강창일 · 장하나 · 김성곤 · 남인순 · 김기준 · 김광진 · 양승조 · 이석현 · 배재정 · 김우남 · 정호준 · 조정식 · 홍의락 · 진성준 · 김재윤 · 우원식 · 이용섭 · 홍영표 · 최동익 의원 발의)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이진복 · 이만우 · 김무성 · 이채익 · 한선교 · 정성호 · 최봉홍 · 류지영 · 박인숙 · 김성태 · 조명철 · 이한성 · 김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3)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김무성 · 윤관석 · 이자스민 · 김광진 · 이만우 · 윤호중 · 주영순 · 이채익 · 김성태 · 이진복 · 이완영 · 이재오 · 김한표 · 류지영 · 최봉홍 · 유일호 · 이종훈 · 하태경 · 이한성 · 강석호 · 이예리사 · 김장실 의원 발의)(의안번호 7320)



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김세연·문정림·윤명희·정문헌·이재영·주영순·정희수·김을동·김동완·조원진·김태원·이운룡 의원 발의)
5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추미애·홍영표·우원식·한정애·박수현·윤관석·진성준·박남춘·백근기·장하나·김경협·최동익·김관영·김현·원혜영·이상직·김승남·강기정·김우남·김세연·김성곤·김재운 의원 발의)
52.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이현승·문정림·윤상현·함진규·이명수·이우현·김한표·류지영·홍지만·이채익·이종진 의원 발의)
53.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재운·정호준·이미경·신학용·정청래·진선미·부좌현·홍의락·임수경·유승희·전병헌·윤관석·홍영표·조정식 의원 발의)
5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정갑윤·윤명희·정문헌·박성호·이한성·황영철·송영근·김한표·문정림·이명수 의원 발의)
5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장하나·이미경·한명숙·유인태·홍영표·이종걸·배기운·배재정·부좌현·진성준·조정식·윤호중·이목희·한정애·윤후덕·정호준·박완주·최동익·남인순·은수미·심상정·인재근·김상희 의원 발의)
57.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이우현·이노근·강은희·하태경·박성호·주영순·강기운·서용교·이운룡·홍지만·손인춘·김현숙·홍영표·김성태·강길부 의원 발의)
5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우윤근·이춘석·박수현·부좌현·인재근·이인영·윤후덕·이학영·우원식·양승조 의원 발의)
59.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60.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한명숙·최동익·

진성준·윤관석·김재운·우원식·이용섭·배기운·양승조·조정식·정세균·홍영표·백재현·박남춘·배재정·윤후덕·정진후·임수경·이원욱·장하나·김광진·정호준·박원석·은수미·한정애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0항까지 58건의 법률안, 결의안 1건과 청원 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하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9월 27일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주의 한 관광농원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육사를 공격했고 일주일 뒤인 11월 24일에는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탈출하여 사육사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분의 사육사는 모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작년 8월 5일에는 흰코뿔소가 우리에서 탈출했다가 사육사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쇼크사한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원 동물들이 탈출하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은 시설이 낙후되거나 관리가 허술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물원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동물원 내 사육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등 동물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동물원은 운영 주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쇼에 이용하기 위하여 동물을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하거나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최소한의 사육환경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사육동물들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의 주요 내용은 동

물원을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동물원의 설립·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게 하고, 동물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동물원이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의 개체 수, 폐사나 질병 발생 등에 관한 동물원 사육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였고, 사육 중인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원이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생명윤리에 바탕을 둔 동물원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동 법률안은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생명윤리가 점차 높아져 가는 이때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바꾸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순환자원의 이용 극대화를 통해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자원순환위원회를 두어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재활용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중소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종료 인정제, 재활용 시설에 대한 특례 등을 도입하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매립·소각부담금과 자원순환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에서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제14항, 제22항, 제31항, 제53항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6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변구역 등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정비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관측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상관측자료에 품질등급을 부여하고, 산악·도서지역 기상측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관측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병행하여 주관하는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을 소음·진동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에게 일원화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경우 야생동물에 한정하여 포획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야생식물의 채취도 금지하고, 야생동물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진단을 의뢰하며,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품연료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제조·사용되는 것을 막는 한편 친환경적 활용이 보장되도록 고품연료제품을 수입·제조·사용 시 이를 신고토록 하였으며, 품질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피해에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등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환경피해를 입은 자의 소송 준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5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과 결의안 및 청원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2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한공식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8항까지 58건의 법률안, 제59항 결의안, 그리고 제60항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58건과 결의안 1건 및 청원 1건에 대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제출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주체로 농협을 추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농협이 선정되어야 하고,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할 경우에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등의 규정 미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가축분뇨 관련 업자 및 기상사업자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제외하려는 것이나 개정된 민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하며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악이나 섬 지역의 기상측기에 대해 정부가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가가 설치비만을 보조하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재정운용의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구매하여야 하는 녹색제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건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미경 의원안은 경마권 장외발

매소 등을 다중이용시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공공적 성격과 해당 시설군의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 파급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은 동물원 등의 관리위원회에 심사뿐만 아니라 의결 권한까지 두는 것은 동 위원회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규제가 신설되고 현행 법령에 따른 동물원 등의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가 매입의무 등 국가책임 범위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지급시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확보, 다른 급여제도의 수급 발생권과의 형평성,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재정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나 시도 단위의 교육 대상자가 적고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폐기물반입부담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범위나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 소관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제출 후 이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3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주영순 의원안은 기존 설치된 완충처리시설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이 필요해 보이고, 박성호 의원안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리 대상 및 범주에 개별 시설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3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명숙 의원안은 야생동물 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이고, 강동원 의원안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현행 수렵제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계획의 수립, 살처분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가축질병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4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완영 의원안은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나 그 시행 시기는 환경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자원소비 억제 및 폐기물 발생 제로화를 입법 취지로 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및 산업 관계자 간의 이견 조정과 제도 시행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은 고형연료제품에 대

한 품질기준 마련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환경 위해 가능성 차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법률안 제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해소하는 등 일부 법체계 및 자구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건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안과 은수미 의원안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에 따른 위헌 요소를 제거함과 아울러 정화책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영순 의원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토양오염 사실, 정화조치 이행 완료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7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홍영표 의원안은 의료폐기물 등의 권역별 처리를 통한 관련 폐기물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나 권역별 처리에 따른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봉홍 의원안은 새로운 재활용 신기술의 신속한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환경위해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공정한 감시기능 수행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주민감시요원 추천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나 지원협의체 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추천권한 중복 여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환경교육센터를 법인으로 설

립하려는 것이나 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규정을 법률에 둘 필요가 있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기관의 연장 신청 시 평가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위규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서용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8월 12일 발의안은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나 정부·업계·전문가의 논의 결과 현행 통합발주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10월 21일 발의안 중 환경분야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부당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조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나 시설의 시공자나 설치자에게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의 수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보수 시로 한정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3건의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한명숙 의원안은 실내 공기질 오염 및 지하수 장해를 분쟁조정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나 실내 공기질은 국토부와의 이견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지하수 장해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외한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변화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기관을 각각 한국환경정책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우원식 의원안은 동 개정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사업자단체 등이 책임공제사업

을 할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환경책임보험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어 책임공제 규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환경 협력을 통해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질의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순서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지명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든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 검토 안에도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도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처지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1억 원 이게 적정한 거냐라는 질의가, 검토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호주 FTA 타결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과징금 1억 원은 상한입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에서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또 위반 횟수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기 되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가 다 1억 원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 가지 않게 하위 법령에서 가감 규정을 정할 것입니다.

○**은수미 위원** 시행령상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법안소위 때 이 얘기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이것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은수미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전 처리과정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하여튼 전자시스템을 가지고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농가가 고령자가 많으시잖아요, 대체적으로 60세도 젊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이 가능할까요?

아니, 이게 배워서 되는 문제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그런 축산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수탁해서 가져가는 업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그러한 임무를 주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께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은수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침이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하위 법령을 만들면서 그런……

○**은수미 위원** 그것도 시행령 차원에서 그게 관리가 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거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은수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상했었던 것이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은수미 위원** 저는 이것이 자원화 형태로 가는 것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수원·화성·오산 축협이나 안동농협의 경우 올해 예산 집행률이 0%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제주농협은 사

업을 포기할 예정인데 이렇게 시범사업도 제대로 안 되면서 자원화 쪽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거기서 주로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이 농협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공공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국토부 관련법에 공공기관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행정상 차질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그 대상자가 농협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 문제를 공공기관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넣으면 보다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까지는 농협이 공공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그래서……

**○은수미 위원** 그러면 왜 시범사업을, 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농협은 기본적으로 축산농가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임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또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입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서 본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법안은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 일부 된 것도 있지만 주로 농협에서 같이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협을 공공기관으로 인정해도 본사업은 오히려 더 잘되는 사업이 되지, 시범사업에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글썬요, 저는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돼서……

어쨌든 다른 법안들도 다 질의를 나중에, 오늘 못 한다 하더라도 법안소위 때 검토를 하겠습니까만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법률 중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환경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보전협회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은수미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시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교육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자치단체로 지금 확대를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일원화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시·도지사도 일원화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게 지금 법안 개정 내용인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지방이양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또 환경보전협회는 전국 시도별로 지회가 있어서 거기서 해 오고 있는데 따로 딱히 할 만한 데가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심의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이게 정부 법안으로 나와 있는 건데 정부가, 그러면 정부 자체도 지금 확신을 못 가지는 안을 법안으로 내신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지방이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은수미 위원** 결정사항이라서 불가피하셨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어쨌든 저로서는 시·도지사에게 교육업무가 이양된다고 해도 결국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전협회에 위탁이 되고 지금까지 결과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육시킬 전문인력이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은 환경부 입장을 묻고 싶었는데 어쨌든 입장까지 들으니 저로서는 불가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 의원님과 정부안 했던 것은 한명숙 의원님

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지요?

○**한명숙 위원** 예.

○**은수미 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제가 법안 제출 보고도 못 드렸기 때문에 장관님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정법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인데요, 이미 유럽 미국에서는 법으로 환경책임법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법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화학사고가 크게 나 가지고 피해액이 어마어마해서 그것 배상을 하다 보면 기업이 도산될 거다 그런 우려를 방지하고 당연히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 보상도 신속 정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법인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작년 9월 27일 인가 구미 불산사고가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금주 중에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 역시도 산업계에서 오히려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오히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급적 전달을 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의료폐기물법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지역으로 한 예가 찾아보기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를 드나들거든요, 주를 드나들고.

이렇게 만약에 되면 수도권 병원 폐기물 처리 시설도 문제고 따라서 처리 비용도 수도권에 폭등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혹시 장관님 미리 짚어본 게 계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적

출물 규정을 환경부로 이관해 올 당시 제가 그 입법을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의 사례도 전부 살펴봤는데 외국은 딱히 의료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거기 외에서는 다른 데서는 처리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황 때문에 의료폐기물은 그 전용 처리시설에 가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당시 입법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권역별로 또 나누는 부분은, 지금 유해폐기물도 바젤협약에 의해서 선진국 간에는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것만 막고 있거든요.

그런 유해폐기물도 세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권역을 나눠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2580'이라는 프로 장관님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EPR로 인한 공제조합의 부정 비리가 많이 고발이 된 프로였는데요. 장관님 보시면서, 환경부의 감사는 진행 중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감사를 지시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거기 프로에 보면 '환경부 감사도 신뢰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환경부 출신이 거기에 간부로 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환경부 감사를 했지만 그런 측면이 보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각 공제조합이 하나의 공제조합으로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 변경 차원에서 제대로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부 감사와 별도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면, 더군다나 환경부 감사가 불신을 받는다면 당연히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첫째는 저희가 엄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는, 이게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데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정하게 해 주시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법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여부는 우리 환노위 행정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도 의료폐기물 권역별 처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방금 우리 이완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한 것은 현재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업체들의 난립 때문에 과당경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의료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실함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장거리 이동을 좀 규제해야 된다는 게 제 법안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이고. 그래서 외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EU에도, 물론 바젤협약에 의해서 다른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의료폐기물이 특히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보건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별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 아시겠지만 톤당 77만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77만 얼마입니까, 77만 3000원. 이게 지금 77만 3000원인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홍영표 위원 7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종류별 처리단가의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래서 의료폐기물 소각비용은 77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처리단가는 아니고요, 의료폐기물이 방치폐기물로 났을 때 그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의 기준단가입니다.

○홍영표 위원 이게 방치 등의 폐기물이 아니고

요, 의료폐기물 소각비용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소각비용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홍영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가 있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요, 방치폐기물인데 그중에서도 의료폐기물의 소각처리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방치폐기물은 왜 그러냐 하면 공제조합에 의해서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처리하거나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처리하거나 보험을 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강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기준가격이지, 발생자와 처리자 간의 거래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시장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대개 소각처리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나머지 부대비용도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업계에서 대개 얼마 정도에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소각비용은 수도권의 경우에 톤당 약 37만 원에서 한 44만 원 정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18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범위가 좀 넓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마 시장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 처리비용이 낮으면 좋다는 논리를 정부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체들이 아주 원격지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보면 그 업체들이 그런 비용을 가지고는 영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업체들이 난립하고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인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언론에 한번 크게 보도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의료폐기물은 장거리 이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일정한 어떤 조건하에서는 다른 권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수정안도 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의료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에서 할 때는 최대 벌칙이 무단투기라도 벌금 500만 원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기물관리법으로 가져오면서 7년 이하의 징역은 징역대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벌금을 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이 아니고 둘을 다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벌칙을 강화했고.

두 번째는, 운송과정에서 전용차로 운송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컨테이너 방식으로 완전히 밀폐된 차에다가, 또 그 안에 넣는 포장물도 밀폐식으로 되게 되어 있고, 또 4℃ 이하로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년 운영해 오면서 운송과정에서의 사고로 직접 어떤 위해를 느끼게 한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10t을 신고 간다 했을 때 운송비용 1회에 한 2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처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그중에 운송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것을 권역별로 한정하게 되면 그 권역에 있는 몇 개 업체가 담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환자들한테 모든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순서가 주영순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주영순 위원님 하시고 한명숙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최봉홍 위원님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김경협 위원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장관님,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태자연도 작성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맡아 왔었는데 국립생태원의 신설로 해서 이 업무 자체가 전부 생태원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시는……

예.

○**朱永順 委員**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생태자연도 작성 업무도 이관되게 되었는데, 동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맡게 되면 유착 비리에 더욱 취약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면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데, 등급에 따라 개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생태자연도 등급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가 자기 토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 생태자연도 1등급이면 환경영향평가 작성시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못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자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하겠지요.

만약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조사를 하게 된다면 개발업자와의 유착과 비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만 국립생태원은 안을 만드는 곳이고요, 환경부가 확정 고시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2차적으로 다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확인 점검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고시하게 됩니다.

○**朱永順 委員** 생태자연도 작성은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조사보다도 중요한 조사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기보다는 이것은 더욱 책임 있는 공무원조직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상정된 법안 중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의 피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으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조항들이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법안 내용을 잘 검토하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지금 경제계에서도 17개 경제단체들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염려스러운, 화평법과 화관법보다도 오히려 이 법을 더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일부 그런 목소리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법률안 중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을 보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것이 법률에서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명확성이 헌법정신에 부합합니다. 다만 환경오염의 특성은 그런 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 대법원 판례로 이런 부분이 일부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는 과거의 여러 오염원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인지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지가 됩니다.

또 과학기술지식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런 위해를 몰랐는데 이게 사후적으로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위해성이 인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현실화됐을 때는 원인자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을 거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그런 판결에 작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륙법의 원조 국가인 독일도 그 법에 그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 하셨습니까?

○**朱永順 委員** 예.

○**위원장 신계륜**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가 정전 및 DMZ 설치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DMZ 설치 60주년이 되는 해 12월이 가기 전에 이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렸습니다.

국회가 DMZ의 역사적 또 정치적·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경색된 남북 대화의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비정치적인 분야인 환경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작년에 남측 DMZ에 대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유보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남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접근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경우에 직접적인 이용이 아닌 접경지역 중심의 활동과 정책 지원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제주도 사례에서 보듯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개발 이용 틀로서 유용할 뿐 아니라, 환경 협력은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남북 간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DMZ는 그 상징성이 커서 국제적인 관심과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이번 결의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것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아까 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저에게 넘기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명숙 위원** 그 부분이, 개정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보면 사무국과 상임위원을 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처리건수도 너무 낮고요, 지방 이양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 사무를 이양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 취지는 살리는 것이 좋겠지만 결국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바탕이 되어서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활

성화 안 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다만 전치 절차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반드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다시 말하면 피해 당사자가 중앙으로 갈 것인가, 지방으로 갈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 본인이 원해서 받았을 때는 처리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준비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 취지가 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정부안을 보면 지하수 수위 저하만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입안 당시에 수위 증가는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하수 수위 증가와 감소를 모두 고려해서 분쟁 조정 대상으로 저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맞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하뿐만이 아니라 또 지하수위가 올라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하는 개념이 좋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내 공기질 오염과 지하수 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가 환경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금은……

○**한명숙 위원**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소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당사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으로 하면 그 인과관계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나 또는 환경교육진흥법 등 이런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국정 과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작년도에 재활용촉진법 통과시키는 데 1년 걸린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몇 때문에 늦어졌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해관계자들의……

○**최봉홍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이해관계자들 대여섯 사람이 모아 가지고 집단적으로 선거 분위기까지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1년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지금 산자부하고 완전 조율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됐는데 약간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들은 뒤에 음성적으로 몇몇 이해당사자, 결국 밥그릇 싸움하는 업자들 편을 들어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장관님이 책임지시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이 내용 자체가 목표관리제가 생기면서 매립부담금 해서 매립 제로화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전국으로 봐 가지고 고물상이니 뭐니 전부 합치면 내용 면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정책이 어떻게,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따라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지상 보셨지요? 아프리카의 폐전

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유럽에서 많이 가는 것.

○**최봉홍 위원** 그게 못 가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자원이 되면 근본적으로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라벨을 안 붙이게 되면 전부 수출돼 가지고…… 지금도 군산항에 한 2000t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양 부처 간에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EPR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그것 왜 가만히 놔둬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필요한 입증자료, 이런 증거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수사 당국에도 넘기고……

○**최봉홍 위원** 지금 불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봐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려면 EPR 제도…… 아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이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감사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바로 고발해서 수사를 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은 감사에서……

○**최봉홍 위원** 그리고 중간에 저도 지금 이것을 하면서 불로소득 없앤다고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만 불로소득 해 주는 사람 제거하시고 거기에 실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할머니, 아주머니들, 모으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한 푼씩 더 돌아가도록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문제는 법을 통과하려면 먼저 업체 간에, 그다음에 부처 간에 그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통과된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도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당 의원님도 또 한 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입법소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려면 우선 부처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업체가 올바른 업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좀 가려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농협의 공동자원화시설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축분뇨는 주로 액비나 퇴비 형태의 비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자원화 처리를 해 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화 및 처리되는 전체 물량의 25%를 축산농가나 퇴비 하는 민간업체들이 직접 처리를 담당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농협에 대해서 이 자금을 지원해 줄 경우에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농협은 지금 이미 농림부로부터 유사 사업에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중 지원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농협은 개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민간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축산농가에서 개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모아다가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중복이 되지는 않느냐?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경협 위원** 기존에 농협에서 축산기금 지원을 받아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농협 자체의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은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통해서 해 왔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간업체들이 처리해 오던 영역, 이 부분을 침범하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민간은 특히 퇴비화할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우분이나 계분, 이것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공공처리시설은 액상입니다, 분뇨. 이것을 주로 받아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성상에서도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축산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는 명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김한표 의원 발의 녹색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되는 녹색제품 품목을 정하고 구매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구매담당자에게 인사상 이익을 주는 건데, 경영평가에 반영하거나 인사상 이익을 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구매대상 품목을 정하면 이게 좀 지나치게 특정 품목 자체로 축소되면서 한정돼 버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환경마크라지 환경표지인증 제품, 그다음에 재활용을 잘한 케이스로 인정되는 GR마크 부여 제품은 모두 우선구매대상으로 돼 있는데 개별 품목별로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 이렇게까지 하면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구매대상의 품목을 정하기보다는 녹색제품 생산자들이 스스로 제품을 홍보하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업체들이 좀 영세하고 홍보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원하는 방향을 이쪽의 이런 업체들이 홍보나 소개할 기회를 좀 지원을 해 주는 것……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대기업 제품들이 거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녹색제품 구매실적 보니까 2010년 1조 6000억, 11년에 1조 6000억, 12년에 1조 7000억, 많아 보이는데 실상으로는 대기업 제품이 구매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구매담당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높고, 지금처럼 환경산업기술원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을 모아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행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의회의 사업, 즉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게 있고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사업 착공 후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사업자의 조치결과만을 통보받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의견 제시 기관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는 안이 김영주 의원안이고요, 환경공단으로 하는 안이 우원식 의원안인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전문성은 있지만 사전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자기부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적이 되고, 우원식 의원의 안은 환경공단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은 과연 이런 것들을 수행할 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냐, 이해관계는 충돌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두 법안이 그런 부분에서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후영향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팀을 새로이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게 되면 기존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했을 때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지적이신데, 이 부분은 일차 우리 지방청으로 하여금 사후영향조사서를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하고 전문 의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시해서 의견을 받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심상정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용교 위원님,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저는 간단한 것, 제출된 법안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12월에 바이오사이드 관련된 종합연구보

고서가 나올 예정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심상정 위원** 그러면 바이오사이드 연구보고서만 나오면 법제화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화평법,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셔서 가지고 정부안하고 같이 병합 처리했던 그 법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드 연구보고서 나오면 가능한 한 하위법령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EU가 9월부터 바이오사이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살균제·소독제·보존제·향균제 이런 관리가 필요한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서도요. 그런데 이게 화평법으로는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평법이 지금 도입단계인데 또 바이오사이드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산업계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균제·소독제·보존제·향균제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 정도에는 올해 보고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법적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미 제정된 화평법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바로 입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입법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심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용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지난번에 국감 때 친환경 사칭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요. 공정 위에서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를 소관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금지조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도 같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일단은 제가 낸 의견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이 벌칙조항을 신설할 경우에 지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조를 준용할 예정인 것 같던데요. 이런 경우에 위반자들 같은 경우에 제조업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사칭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들이든 또는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대개 영세한데 이 정도 처벌 수위가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업을 따로 벌칙을 정하고 그렇지 않은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을 또 따로 정하고 이런 부분도 입법기술상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교 위원** 영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입법례도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작을 올 12월까지 한다면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직 완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완료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 친환경이라고 표기된 매트를 구입한 분들이 한 5000명 정도 회원이 모여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서용교 위원** 각 제품들마다 이런 경우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을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 때 환경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들을 좀 만들어서 적절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중에 분리 발주 문제인데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여서 TF팀을 운영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용교 위원** 거기서 공사 시공상 비효율 및 품질 확보 곤란, 원가 상승에 의한 국민 부담 증가,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혼란, 발주자 선택권 제약 이런 이유로 통합 발주 원칙을 유지 했는데요. 기존의 입장하고 전혀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19번에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라는 항목에 여성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와 함께 대규모 계약을 분리 발주 법제화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아마 중요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아이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분리되는 경우에도 환경기업체 간의 덤핑으로 인한 부실시공 이런 부분도 시공은 시공대로 부실하고 중소기업들이 별로 이익을 못 보는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교 위원** TF팀을 구성할 때 업계 관계자로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다 종합건설업체 관련자들입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하나만 예를 들면 원가 상승에 의한 국민 부담 증가 이런 경우에도 지금 발주처 공사 관리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실제로 건설업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배제한다면 분명히 비용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시행하고 있는 예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리 발주를 시행해서 원가의 약 5% 정도를 절감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공상 비효율 및 품질 확보 곤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발주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문제이지 제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이런 것을 반영을 못 했다면 환경신기술에 관련된 사용료 지급 의무화라도 TF에서 논의가 좀 됐어야 되는 것 아

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TF팀의 활동 결과는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 과정은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국정감사 때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설폐기물도 분리 발주하도록 제가 제도를 도입해 봤고요. 또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설계하고 영향평가를 분리하도록 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에 비해서 기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덤핑하는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리 발주가 그렇게 기대했던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 두 가지 제가 도입한 사례를 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하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떼서 분리 발주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여지를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 좀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환경과 관련된 환경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환경 일반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중에도 또 하나의 폭을 좀 좁혀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또는 효과가 있을 만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러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폐기물 처리방법과 관련해서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권역별로 구분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장관께서는 외국 사례를 보면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도 할 수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본질이 누가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그



것을 처리해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또 처리해도 되는 물질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소각하는 것이지요, 결국?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은 거의 99%가 소각입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의료폐기물 물질이 제가 그냥 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 PVC 같던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PVC가 대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PVC 자체는 아니고 거기에 묻어 있는 병원성 균입니다. 병원성 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그 균 때문에 결국 그 자체를 소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균은 죽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PVC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는 없냐는 것이 제가 걱정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쓰는 용기 중에 사실은 PVC 자체는 적습니다. 합성수지 중에는 염소가 들어 있는 PVC가 있고, 염소가 안 들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병을 가리키며)

이런 것도 염소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소가 안 들어 있는 부분은 다이옥신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폐기물 중에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물질을 어느 정도 쓰는지 그런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개별 물질별로 조사하는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조사를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이종훈 위원** 그것을 소각하기 전에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료폐기물이 어차피 소각되어야 되는 것이라면 의료에서 쓰는 물질들은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어떤 물질이어야 된다는 규제나 무슨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부분은 의료폐기물뿐만이 아니고 여타 산업 분야에도 PVC를 쓰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것까지 하다 보면 효용성을, PVC가 분명히 장점인데 그 효용성을 또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로 나오는 물질 그 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다이옥신 배출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연초 되면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을 갖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총 21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환경부가 제출한 법률은 고작 9건밖에 안 돼요. 9건,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 입법계획에 맞춰 가지고 실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딱 1개뿐이네요. 이것은 애초 연초 계획대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 그런 측면에서도 당초 약속하고 계획했던 그런 것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년도 입법계획 작성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국정과제를 입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그런 공약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강화 그리고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허가제도 선진화,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성태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사회 실현, 이제 가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책임을 갖고 집중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위해서는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서 피해구제법 이완영 의원 발의하고 또 자원순환법 이것은 최봉홍 의원이지요, 안이. 그리고 내년엔 논의될 허가제도 선진화법,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이런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오늘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상징성과 또 생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의 이런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도 공감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공감합니다.

○**김성태 위원** 또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도 기울였고, 2008년 2월 달에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또 추진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저는 추진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2011년 9월에 유네스코 DMZ 남측 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용도지역의 미비 이런 이유로 지정이 유보된 상태예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철원지역이 유보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게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북공동,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외교부나 통일부 이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남북 간에 경색된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도 되고, 이것도 좋은 어젠다가 될 수 있어요, 남북 관계 개선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세계

평화공원 조성 논의 진전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대체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발언이 끝난 것 같습니다.

특히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1항부터 60항까지 의안을 각각 토론했습니다마는 한명숙 의원께서 발의한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은…… 한명숙 위원님,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명숙 위원** 예.

왜냐하면 올해가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12월이 가기 전에 이것을 해서 의미를 좀 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지금 여기서 결의안을 결정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제가 아까 제안한 내용……

○**한명숙 위원**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있거든요. 이것 진전되는 사항과 연계해 가지고……

○**한명숙 위원** 그래서 세계평화공원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힘을 더 받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하면 평화공원에도 더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명숙 위원님, 아마 김성태 위원께서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약간 추가할 의견이 있어 보이니 그것을……

○**한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부가 실시를 할 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점이라든지 또 사업의 내용도 그렇게 조정할 수는 있겠지요.

○**위원장 신계륜** 그러니까 결의안 내용을 말하

지요, 결의는 하되 김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 수정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고 당장 내일 될 북한에다 제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결의하면 이게 본회의로 넘어갈 거예요. 본회의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12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지요. 그 안에 과연 소위 남북관계가 경색이 좀 풀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기미도 보이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세계평화공원 조성하는 이런 내용도 좀 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DMZ 설치 60주년이 올해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대통령께서 평화공원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도 큰 흐름에서는 이것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2월 안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복원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정치적인 이러한 것으로 견인해 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본회의로 넘어가서 된다고 할 때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가야 된 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의라는 하나의 취지를 우리가 서로 가지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진짜 엄청나게 경색돼 있는데 정부가 제안한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이것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죽 가 버리면 정부가 좀 우스워질 것입니다.

○**한명숙 위원** 평화공원하고 이것이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북한을 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능하시면 세계평화공원도 축구 결의안에 넣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 한명숙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을 약간 부가하거나 첨가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되 그 문안 수정을, 김성태 위원님 조금 수정할 게 있지요?

○**한명숙 위원** 수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첨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수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제안한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와 함께……

○**위원장 신계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나아가되 그런 부분을 약간 내용에 첨가하고 보완해서 통과시킬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소위에 넘겨서 소위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소위에 한번 넘겨주시지요.

○**최봉홍 위원** 넘기지요, 소위에.

○**위원장 신계륜** 한명숙 위원님, 일단 소위에 넘겨서 안을 조정하도록 해 볼까요?

○**한명숙 위원** 예.

○**김성태 위원** 그러시지요,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지만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기 위해서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모든 의안을 각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의안 중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10항 동물원법안, 제11항 사육

꿈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9항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과 제32항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공청회 개최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실시 여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뒤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는 애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지만 최근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불편이 되고 있는 철도파업에 관한 현안보고를 법안심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1.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승남·이미경·전병현·김우남·유성엽·김태년·김영록·김윤덕·이상민 의원 발의)

**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서용교·최봉홍·주영순·이종훈·김진태·이학재·김기선·전하진·염동열 의원 발의)

**6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김성곤·김재윤·김춘진·배기운·배재정·원혜영·윤관석·윤호중·장하나·최원식·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주영순·이진복·이한성·김현숙·이만우·손인춘·김을동·송영근·윤명희 의원 발의)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이한성·권은

희·손인춘·이학재·정의화·李宰榮·유승민·유재중·김상민 의원 발의)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부좌현·배재정·우원식·최민희·정성호·유성엽·이미경·윤호중·김재윤·최원식·김기준·이상직·문병호·최동익·김광진·윤관석·윤후덕·진성준·전순옥·이인영·한정애·신경민·박지원 의원 발의)

**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태원·이강후·정갑윤·김세연·강은희·이완영·류지영·박창식·서용교·강기윤·황영철·주영순·강길부·민현주·이주영·조명철·정문헌 의원 발의)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남인순·배재정·서용교·신경민·심상정·이미경·장하나·최민희·한명숙 의원 발의)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유승희·김재연·이춘석·장하나·박홍근·이원욱·안규백·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379)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노응래·박홍근·배기운·이원욱·이학영·이해찬·이춘석·전순옥·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9)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이한성·정문현·최봉홍·정수성·김성찬·유승우·박인숙·김상민 의원 발의)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배기운·유성엽·김기준·부좌현·이미경·김광진·이찬열·김성곤·장병완·박민수·정호준 의원 발의)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남인순·박지원·배기운·부좌현·신경민·오영식·윤호중·윤후덕·이상직·조정식·전정희·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진성준·안규백·이상직·최민희·오영식·유승희·윤호중·전정희·박수현 의원 발의)

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은수미·장하나·배기운·안민석·추미애·이낙연·전정희·유성엽·안규백·이자스민·원혜영·김광진·유승우 의원 발의)
7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유성엽·신동우·이만우·송영근·조명철·강동원·이재영·김동완·주호영 의원 발의)
7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인재근·배재정·전정희·전병헌·이인영·노웅래·부좌현·이상직·홍종학·김제남·문병호·유은혜 의원 발의)
7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헌·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8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남인순·박지원·배기운·부좌현·신경민·오영식·윤호중·윤후덕·이상직·조정식·전정희·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8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길정우·김현숙·윤명희·이운룡·이만우·주영순·민병주·류지영·김한표·김광진·추미애·은수미 의원 발의)
8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헌·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8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제남·도종환·박원석·박홍근·배재정·서기호·유기홍·장하나·정진후 의원 발의)
8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유승우·김종태·안규백·심학봉·권은희·송영근·김상훈·김태환·이노근·이자스민 의원 발의)
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이인영·박민수·김성주·유성엽·김관영·김영록·김윤덕·배기운·윤명희 의원 발의)
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헌·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신경민·배재정·박홍근·정청래·김한길·추미애·유승희·안규백·서영교·우원식·홍의락·김상희 의원 발의)
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태원·이강후·정갑윤·김세연·강은희·이완영·류지영·박창식·서영교·강기운·황영철·주영순·강길부·민현주·이주영·조명철·정문헌 의원 발의)
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정훈·이만우·서용교·김재원·박창식·하태경·이한성·유승우·김기현·김광진·김태원·강은희·김기선·이에리사 의원 발의)
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기운·배재정·부좌현·심상정·장하나·최민희·추미애·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2)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장하나·신경민·배재정·이미경·한명숙·김경협·심상정·홍영표·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9)

- 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주영순·서용교·이종훈·김상민·박성효·유승우·민현주·김정록·이재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4)
- 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주영순·정문헌·여상규·정희수·이운룡·정갑윤·박창식·안효대·김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52)
- 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박남춘·최재성·배기운·정성호·최동익·김승남·김우남·윤호중·이낙연·김성곤·이상민·황주홍 의원 발의)
- 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유성엽·김우남·우원식·김승남·윤호중·김기준·민홍철·송호창·유은혜·진성준·정호준·박홍근·박민수·최동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9)
- 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유승희·김재연·이춘석·장하나·박홍근·이원욱·안규백·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1)
- 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박홍근·배기운·이춘석·이해찬·서영교·노웅래·문병호·이원욱·이학영·전순옥·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791)
-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안홍준·김정록·정희수·전순옥·이만우·김현숙·유승민·윤후덕·강석훈 의원 발의)
-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김성곤·김승남·김용익·김윤덕·김춘진·박남춘·박수현·박주선·박지원·배기운·배재정·신경민·심상정·안규백·원혜영·유은혜·윤관석·윤후덕·이미경·이상직·이인영·이찬열·이해찬·장하나·전순옥·정성호·최봉홍·한명숙·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김성주·김현미·남인순·박홍근·배기운·신경민·우원식·유성엽·윤호중·윤후덕·이상직·이학영·장하나·전순옥·추미애·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남경필·주영순·민현주·김상민·서용교·이완영·이이재·전하진·강석훈 의원 발의)
- 10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전순옥·여상규·권은희·홍의락·노영민·홍지만·이철우·정갑윤·김기선 의원 발의)
- 1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박수현·김광진·이상민·주영순·이만우·윤호중·배기운·이미경·홍영표·박남춘·윤관석·서용교·김춘진·김재윤·강창일·은수미·전순옥·김성태·김성곤 의원 발의)
- 10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남인순·박지원·배기운·부좌현·신경민·오영식·윤호중·윤후덕·이상직·조정식·전정희·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 10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헌·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 10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배기운·문병호·민홍철·부좌현·심상정·윤관석·윤후덕·이미경·전순옥·한명숙·한정애 의원 발의)
- 1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우원식·홍종학·최원식·최재성·윤관석·한정애·이춘석·박지원·박주선·이미경 의원 발의)
- 1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태원·이강후·정갑윤·김세연·강은희·이완영·류지영·박창식·서용교·강기윤·황영철·주영순·강길부·민현주·이주영·조명철·정문헌 의원 발의)

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기운·배재정·부좌현·심상정·장하나·최민희·추미애·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김경협·김용익·김재윤·박남춘·박민수·배기운·부좌현·안민석·우원식·유승희·유은혜·이인영·장하나·전순옥·정호준·추미애·한명숙·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1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윤관석·유은혜·진성준·원혜영·배기운·박남춘·박민수·신경민·윤후덕 의원 발의)
1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유승희·김재연·이춘석·장하나·박홍근·이원욱·안규백·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0)
1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박홍근·배기운·이춘석·이해찬·서영교·노웅래·이원욱·이학영·전순옥·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7)
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이한성·이현재·문대성·홍지만·안홍준·남경필·유재중·윤명희·이재영·신경립·류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0)
1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이현재·이진복·류지영·송영근·이한성·홍문표·유재중·손인춘·남경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6907)
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낙연·배기운·이종걸·윤후덕·장하나·전순옥·김재윤·박지원·김성곤·최민희·유성엽·박남춘 의원 발의)
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장하나·이자스민·최원식·전정희·윤관석·한정애·윤호중·이미경·인재근·백재현·전순옥·은수미·진선미·김상희 의원 발의)
1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갑윤·류지영·정의화·이현재·주영순·박창식·정희수·윤명희·유승우·이만우 의원 발의)
11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헌·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12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김제남·최민희·최동익·이미경·김우남·김춘진·유승희·송호창·배기운 의원 발의)
121.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배기운·홍종학·윤후덕·김기준·이상직·인재근·한정애·유성엽·이해찬·박민수·남인순 의원 발의)
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배재정·이찬열·박홍근·김용익·전병헌·우윤근·김현미·배기운·박수현·윤후덕·박범계·이춘석·문병호·한정애·서영교·민홍철·김제남·한명숙·박영선·진성준·신경민·이미경·서기호·김성주·전해철·강동원·남인순·박지원·유은혜·최재천·유성엽·이인영·유인태·정진후·박주선 의원 발의)
12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김성곤·김재윤·김춘진·배기운·배재정·원혜영·윤관석·윤호중·장하나·최원식·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1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윤후덕·배기운·김우남·김제남·유성엽·김춘진·이미경·백재현·홍영표 의원 발의)

- 1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박혜자·심상정·김영환·배기운·부좌현·유승희·박지원·최민희·이상직·유성엽·전정희·윤후덕·최원식·문병호·문재인·김재윤·김광진 의원 발의)
- 126. **산업안전보건법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김제남·서기호·박원석·강동원·정진후·김경협·장하나·남인순·이미경 의원 발의)
- 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우윤근·최규성·강창일·부좌현·인재근·오영식·윤후덕·홍의락·우원식 의원 발의)
- 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우남·최원식·정청래·문병호·민홍철·신장용·박남춘·백재현·김민기 의원 발의)
- 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배기운·윤관석·전순옥·민홍철·이상민·유성엽·이상직·이학영·이인영 의원 발의)
- 1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이만우·심학봉·이재영·민현주·주영순·박대출·남경필·정희수·염동열·한선교·주호영·이한성 의원 발의)
- 1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김제남·서기호·박원석·강동원·정진후·김경협·장하나·남인순·이미경 의원 발의)
- 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경협·박원석·진성준·심상정·배기운·이미경·한명숙·서영교·한정애·전순옥·조정식·홍영표·김기준·윤호중·배재정·은수미 의원 발의)
- 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안홍준·정문헌·김세연·전하진·주영순·유재중·김정록·류지영·김장실 의원 발의)
- 1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안덕수·김정록·최봉홍·이완영·이노근·김용태·정희

- 수·류지영·김상민·신경림 의원 발의)
- 1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문정림·윤상현·함진규·이명수·이우현·김한표·류지영·홍지만·이채익·이종진 의원 발의)
- 1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최재성·노철래·김희선·김도읍·권성동·이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승우·경대수·류지영·조명철·김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 1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주승용·신경민·이학영·조정식·최규성·이미경·윤호중·배기운·전순옥 의원 발의)
- 1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장하나·이학영·김성주·배기운·한명숙·문정림·안민석·김광진·이미경 의원 발의)
- 1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김광진·김기준·김재윤·문병호·배재정·부좌현·신경민·우원식·유성엽·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낙연·이미경·이인영·전순옥·진성준·최동익·최민희·최원식 의원 발의)
- 1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남경필·김성태·이이재·윤영석·김상민·최봉홍·주영순·민현주·서용교·김경협·심상정·이완영 의원 발의)
- 1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은수미·장하나·배기운·안민석·추미애·이낙연·전정희·유성엽·이자스민·원혜영·김광진·유승우 의원 발의)
- 1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광진·김경협·김기식·김우남·윤관석·윤호중·이상직·전순옥·한정애 의원 발의)
- 1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주영순·이종훈·최봉홍·유기준·유승우·김성찬·이만우·김도읍·김무성·김상민·김성태·민현주·류지영 의원 발의)



14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한성 · 이만우 · 조명철 · 문정림 · 권성동 · 심학봉 · 강석호 · 주영순 · 유승우 · 경대수 · 황영철 · 김무성 의원 발의)
14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서용교 · 최봉홍 · 주영순 · 이종훈 · 김진태 · 이학재 · 김기선 · 전하진 · 염동열 의원 발의)
1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이만우 · 조명철 · 박인숙 · 민홍철 · 정문현 · 이한성 · 김상민 · 신동우 · 윤재옥 · 김한표 · 이우현 · 문정림 · 박상은 · 이노근 의원 발의)
1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이윤석 · 안규백 · 서영교 · 김우남 · 김경협 · 유기홍 · 이원욱 · 이상직 · 최동익 · 정성호 · 한정애 · 박지원 · 박남춘 · 강창일 의원 발의)
148.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김재윤 · 김현미 · 남인순 · 박홍근 · 배기운 · 배재정 · 신경민 · 우원식 · 유성엽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직 · 이학영 · 장하나 · 전순옥 · 추미애 · 홍영표 의원 발의)
1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박수현 · 이미경 · 백재현 · 안규백 · 노영민 · 윤후덕 · 최민희 · 박주선 · 배재정 · 변재일 · 이윤석 의원 발의)
15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황영철 · 이주영 · 이한성 · 김을동 · 김태원 · 김기선 · 민현주 · 이완영 · 유승우 · 이종훈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5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김성곤 · 김승남 · 김용익 · 김윤덕 · 김춘진 · 박남춘 · 박수현 · 박주선 · 박지원 · 배기운 · 배재정 · 신경민 · 심상정 · 안규백 · 원혜영 · 유은혜 · 윤관석 · 윤후덕 · 이미경 · 이상직 · 이인영 · 이찬열 · 이해찬 · 장하나 · 전순옥 · 정성호 · 최봉홍 · 한명숙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15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진성준 · 안규백 · 이상직 · 최민희 · 오영식 · 유승희 · 윤호중 · 전정희 · 박수현 의원 발의)
15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김춘진 · 문희상 · 박기춘 · 박수현 · 박홍근 · 배기운 · 안규백 · 양승조 · 추미애 의원 발의)
1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윤석 · 노영민 · 최규성 · 강창일 · 배기운 · 박수현 · 김광진 · 이춘석 · 김성곤 · 이미경 · 김영환 의원 발의)
1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김관영 · 오영식 · 김우남 · 김제남 · 배기운 · 서기호 · 유성엽 · 이미경 · 김광진 · 백재현 의원 발의)
1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김승남 · 이미경 · 전병헌 · 김우남 · 유성엽 · 김태년 · 김영록 · 김윤덕 · 이상민 의원 발의)
15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이종걸 · 문병호 · 배재정 · 최동익 · 김동철 · 박주선 · 이상민 · 한정애 · 강동원 의원 발의)
1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을동 · 황영철 · 김태원 · 조원진 · 김동완 · 김기선 · 민현주 · 유승우 · 박창식 · 이종훈 · 김성태 · 이만우 · 이한성 의원 발의)
1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 · 배기운 · 김영록 · 이낙연 · 박지원 · 안규백 · 윤호중 · 신장용 · 박남춘 · 장하나 · 이상직 · 민홍철 · 남인순 · 김성곤 · 강창일 의원 발의)
16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 · 이종걸 · 배기운 · 최민희 · 인재근 · 민홍철 · 이인영 · 박주선 · 우원식 · 정청래 · 이상민 · 유성엽 의원 발의)
16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 배재정 · 이찬열 · 박홍근 · 김용익 · 전병헌 · 우윤근 · 김현미 · 배기운 · 박수현 · 윤후덕 · 박범계 · 이춘석 · 문병호 · 한정애 · 서영교 · 민홍철 · 김제남 · 한명숙 · 박영선 · 진성준 · 신경민 · 이미경 · 서기호 · 김성주 · 전해철 · 강동원 · 남인순 · 박지원 · 유은혜 · 최재천 · 유성엽 · 이인영 · 유인태 · 정진후 · 박주선 의원 발의)

- 16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배기운 · 김민기 · 윤관석 · 전순옥 · 민홍철 · 이상민 · 유성엽 · 이상직 · 이학영 · 이인영 의원 발의)
- 1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배기운 · 문병호 · 민홍철 · 부좌현 · 심상정 · 윤관석 · 윤후덕 · 이미경 · 전순옥 · 한명숙 · 한정애 의원 발의)
- 165.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용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66. 노동소송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6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6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신계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의사일정 169항까지 104건의 법률안, 그리고 1건의 청원, 그리고 4건의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9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셨다시피 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 체불임금 1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고, 체불임금 청산율은 50% 미만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불로 고통 받는 수많은 근로자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 통계를 보면 오히려 재직근로자의 체불비율이 높으므로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제기되

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체불임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적은 서면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임금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 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원인을 보면 의도적 체불, 악의적·상습적 체불, 임금 계산 다툼 등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체불이 6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자가 임금 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1조 원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이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원안대रो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러 나와서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62항과 제153항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이 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여 임금체불 시 보증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 취업포털을 통해 잘못된 취업정보가 제공되는 등 취업사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거짓 구인광고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을 구직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원처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직업소개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등록 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101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2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 나와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164항까지 104건의 법률안, 그리고 제165항의 청원, 그리고 166항부터 제169항까지 4건의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169항까지 109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중간 부분의 의사일정 제62항 정부가 제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임금지급보증제도는 타 업종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의사일정 제63항·제64항 김성태 의원과 김경협 의원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위원회 참여주체 및 논의의제 확대 등 노사정위원회 개편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위원 선출방법,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7항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3쪽의 제67항 은수미 의원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68항부터 제76항까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69항 한정에 의원안은 다태아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도 연장하는 것인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국가와 대기업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 5쪽은 넘어가고, 6쪽의 의사일정 제80항과 제81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한명숙 의원안은 금지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공인노무사 결격조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조항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1항 이완영 의원안은 공인노무사법 및 공인노무사회 회칙위반 시 징계처분을 하고 공인노무사회 가입을 직무개시 등록요건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비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인노무사법 위반 시 징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난 2007년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대학교수의 교원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01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91항 한정에 의원안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 현장에 미칠 수 있는 혼란을 감안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원인, 예방교육 방법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축적된 이후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제90항 한정에 의원안은 다태아를 임신한 근로자에게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OECD 선진국의 기준 등에 비추어 제도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제89항 김상민 의원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복장을 갖추게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작업복 강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작업복 부담에 관한 사항이 국가가 법률

로써 강제해야 하는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92항 최봉홍 의원안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에서 임금상당액의 산정기간을 해고일로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로 규정하는 것으로 금전보상 선택 여부에 따른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금전보상 결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도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맞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하단의 제99항 김정협 의원안은 재직근로자에게 지연이자제도 적용 등 임금체불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연이자제도 적용 및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나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우 행정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지, 체불청산에 사용할 재원을 국고에 납입하게 되어 체불청산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00항 은수미 의원안은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동시에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고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근로시간규정 적용제외사업장 등의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추가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01항 이종훈 의원안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우선재고용대상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입법방향은 타당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이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개시의 전제조건이므로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102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회계연도 이상 연속 적자가 발생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본재산의 보전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기금잠식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내용의 타당성이 있으나 기본재산 사용혜택이 일부 공기업 직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3항과 제104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신계륜 의원안은 이 법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명칭선택권이 제약되어 왔던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의 명칭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입법화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6항과 제164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및 사업주 등이 차별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부터 제118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13쪽 하단입니다. 은수미 의원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아동 연령을 9세로 높이는 것은 타당하나 육아기 단축제도의 기간을 확대하고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제도적인 안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의 제118항 최봉홍 의원안은 고용상 남녀 간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받도록 하고 위반사업주 등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정제도의 도입은 타당한 면이 있으나 벌칙을 축소 조정 하는 것은 예방 및 구제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의 제123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괄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17쪽의 제126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산업재해를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127항부터 제135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18쪽의 제132항 장하나 의원은 폭염이나 혹한과 같은 기상 여건에서 작업하는 데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영순 의원안은 산재발생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9쪽의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제143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9항 은수미 의원안은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보다 근로자의 수급권 행사가 늦어질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타당성이 있으나 소멸시효 확대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 다른 법률과의 소멸시효 차이로 말미암아 법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40항 이종훈 의원안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을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142항 한명숙 의원안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바람직하나 재해인정 형태와 보상 수준, 자동차보험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3항 서용교 의원안은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90명 이내로 확대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모든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확보 및 심리회의 운영정상화 측면에서 개정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4항, 145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145항 김성태 의원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토록 하고 이

전된 ‘보험금등’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위하여 조성된 ‘보험금등’이 보험사에 귀속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이지만 ‘휴면보험금등’의 용처 규정 신설 등 일부 조항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2쪽의 제148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입법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0항부터 153항까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50항 김상민 의원안은 직업소개 개념을 확대하여 과외중개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직업소개 개념 확대 여부는 노무공급계약 알선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와 현행 직업소개 개념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51항 김경협 의원안은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사업장의 경영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153항 정부안은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무료직업소개 사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특수법인을 직업안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직업소개 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의 의사일정 제157항부터 160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59항 김상민 의원안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과태료 한도가 현재까지 동일한 점, 근로기준법과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165항부터 169항까지 1건의 청원과 4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오전과 같이 질의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수미 위원 잠깐만, 오늘 철도파업의 현안질 의도 있는 것으로……

○위원장 신계륜 법률안 질의 먼저 신속히 끝내고 그다음에 바로 그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철곡·성주·고령의 이완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원식 의원님이 노동법원 설치로 한 6개 법안 개정안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들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노동부에서, 법조계에서 노동법원으로 가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죽이자 이런 법안인데 관심이 별로 없으셨네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제가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어떻게 잘,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는,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법원이 도입이 될 경우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노동위원회의 체제하고 비교해서.

○이완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완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노동부에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법원으로 갔을 때 신속성 그리고 경비 드는 문제, 우리 근로자들에 부담이 되고 지금 노동위원회가 신뢰를 많이 회복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시 또 재고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인노무사법 제가 대표발의한 게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징계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법 개정된 것은 각 조항 조항마다의 위반을 들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이 법’, 즉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바꾼 거지요. 전문위원이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한 거지요?

현행은 2007년에 개정에서 각 조항조항마다 나열된 것을 ‘이 법’으로 제가 바꾼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양건 예.

○이완영 위원 이 문제는, 제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나열해 놓으니깐 더 법이 누더기 같아서, 변호사법·법무사법·세무사법 보면 전부 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도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법안소위 갈 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노동부도 그렇게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건고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금 6개 정도 법안이 나와 있으면서 폐지 법안도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번에 정부도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건퇴공, 공제회가 양 부처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산하로 올해부터……

○이완영 위원 이제 올해부터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사실상 국토부는 그러면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거기에 이제 위원…… 이사회에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이 법 개정안 중에 국토부로 보내자라는 법안도 있어요, 6개 법안 중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은 오랫동안 환노위에 계시면서 ‘이게 왜 노동부로 정리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참 이게 애매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노동부 산하로 확실히 정리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법 개정안에 보면 이번에 정부 발의안의 임금지급보증제도의 대상을 보면 ‘국가, 지자체 또는 대령으로 지정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발의한 것은 모든 것을 대령으로 넣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건설업 중에 공공공사만 이것을 하도록 하면 문제가 있다 이지적 같아요, 입법조사처에서도 지적을 했고. 실제로 공공공사의 임체하고 민간부문 발주의 임체가……

신 국장, 공공공사하고 민간부문하고 임금체불 차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민간부문이 더 많다는 지적인데?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공공사하고 민간공사를 딱 나누어서 통계를 내지 않았고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내년 1월부터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공공보다는 민간 쪽이 체불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부안대로 국가, 지자체를 너무 내세우니까 오해를 불러 일으킨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 정부 법안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그러니까 이완영 발의안에 보면 모든 것을 ‘대령으로 정하는 공사’ 이렇게 해 봤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이 된다고 그래서……

○이완영 위원 그러면 정부안도 이것 민간 발

주도 넣겠다라는 방침은 서 있다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완영 위원** 단계적이 아니고 처음부터 넣어 야지요. 단계적이 어디 있어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우리가 확실히 봐도 지금 국회에서의 지적도 민간부문 체불이 더 많은데 하기 쉬운 공공공사 발주부터 하겠다라는 취지밖에, 행정편의적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민간 발주도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법안소위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국내 노동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 문제로 점점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OECD 노조자문위원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전교조 법외 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 서버 압수수색 등을 두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OECD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아주 공식 석상에서 ‘OECD가 한국 정부의 교사·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교사나 공무원 노조 탄압이 국제사회에서까지 대한민국이 노동후진국이라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반응이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 19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당시에 노동기본권을 확대·보장

하겠다고 약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있던 노조마저도 노조 아님 통보를 받으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회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된 그들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법안소위에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허심탄회한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법안에 대한 다른 말씀……

노동부장관님, 한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12월 11일날 OECD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참석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한 바로는 OECD 저희 한국대표부…… 아, 한국 측 말씀하시는군요?

○**위원장 신계륜**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조 측에서?

○**위원장 신계륜** 노조 측 말고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OECD 회원이니까, 아마 OECD 대사가 참석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OECD 대표부 이시형 대사가……

○**위원장 신계륜** 이시형 대사가 참석……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리고 고용노동관도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용노동부에서도 갔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파견관이 갔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OECD 파견관이 그 회의에 갔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무관입니다, 노무관.

○**위원장 신계륜** 노무관이 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 신계륜** 우리나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전교조 관계자들 같이 갔었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 내용은 정확히 전달받았나



요, 어떤 내용으로 얘기됐는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보고를 받았습니  
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양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대표단 문제제기에 대해서 한국대표  
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를 받  
았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게 참 그렇군요.

OECD TUAC의 전반적인 회의 내용을 노동부  
장관이 파악하고 정확하게 접수해서 대처를 하  
십시오. TUAC 가맹단체 전부가 자국의 한국대  
사관에 항의 전화를 하기로 결의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  
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노동부가 파악  
을 하셔야 됩니다.

또 TUAC는 결의문 채택까지 했잖아요? 또 내  
년에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  
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한 것도 밝혀지고 있고  
기타 2014년 교직정상회의에 한국 정부가 대표단  
을 참여할 수 없도록, 거부하도록 논의 중이라는  
이러한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국제사회가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잘 파악  
해서, 이것 각료 회의 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이런 것 보고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특별한 구체적인 사안  
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파  
악해서 정부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내각 전체 모였을 때 이런 얘  
기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  
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하나 위원님!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발의한 법안이 이렇게 논의가 되  
게 됐는데, 산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제  
가 특이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굳이 질의드  
린 이유는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안법 내에 고온·저온 작업에 대한 산재를  
예방할 의무를 사용자 측이 진다고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폭염의 부분, 혹한의 부분을 명시  
하는 것을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검토의견  
은 장관 영으로 규칙에 폭염, 혹한 등의 구체적

인 내용을 넣으면 꼭 법안 통과 아니더라도 충분  
히 실효성이 있겠다는 내용도 받아 봤습니다.

물론 노동부가 이러한 내용을 추진 안 할 이유  
가 없겠지만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  
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 겨울도 한파가 예상되고  
있고요, 폭염·한파에는 폭염경보, 한파주의보 같  
은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  
회적 합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무리하게 장  
시간 일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 저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은  
실무자들과 고용부 직원들과 논의는 하고 있지만  
장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빨리 올 겨울에 이  
와 같은 혹한에 따른 산재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우리 한반도 기후환경이 극과 극으  
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어서 발의하신 취지들  
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지 잘 아시겠지만 기존  
의 규칙에 고온·저온 작업에 대해서 규율을 하  
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보완조치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하나 위원** 하여튼 검토를 상세히 더 해 보  
시고요. 기존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  
게 넣어 냈고, 아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중복을 피하면서 보완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상기후가  
상당히 심해서 여름·겨울철에 특히 연로하신 분  
들, 노인, 노동자 분들이……

노동자층이 훨씬 더 두터워지고 있는데, 정말  
돈 조금 벌기 위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촉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  
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169항  
까지의 의안을 각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한 건 중 의사일정 제61항 가사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1항 노

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6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8항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170. 현안보고(철도노조 파업 관련)

(15시04분)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170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원래 현안보고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철도노조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철도노조 파업에 관련된 현안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안보고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현안보고가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들어 오셨으니……

장관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께서 괜찮으시면—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러겠습니다.

그간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올해 6월 26일 철도산업위원회는 2017년까지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노조는 그 이후에 약 세 차례 등 집회를 통해서, 철도산업 경제체제 도입을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철도노사는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7차례 임금교섭을 한 바 있고, 11월 12일에는 노조가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조정중지를 11월 27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11월 22일 날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12월 6일 날 국토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했

고, 12월 7일에서 8일 철도노사가 교섭을 가졌으나 진전 없이 종료되었고, 12월 9일 날 09시부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날 철도공사 이사회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12월 11일 날 국토부 등 관계 부처 장관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 날 최근 철도노조·민주노총은 이사회 결정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에 답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5대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이사회 결정 철회, 두 번째로 수서발 KTX 면허발급 중단, 세 번째로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 구성, 네 번째로 철도발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소 고발·직위해제 철회,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13일 날 철도공사 노사는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진전 없이 종료가 되었고, 14일 철도노조는 결의대회를 갖고 17일까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철도 운송 및 파업 현황입니다.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KTX, 수도권전철은 정상 운행 중이나 여객열차하고 화물열차는 평상시에 비해서 감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16일 오늘부터는 파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서 열차를 감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06시 현재 파업 참여인원은 7978명이고 필수유지업무는 6693명인데 정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전망 및 대책 부분입니다.

전망은 현재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중단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 재검토 등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으로서 지금 노사 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노조에 대해서는 목적상 정당성 없는 파업 중단을 설득함과 동시에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별한 순서 없이 발언하고 싶은

위원님들께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8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 불편 또는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사고, 생명 이런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커다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타결하려고 그동안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특이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전체회의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철도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취지로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노사 중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안이 있는지, 지금까지 한 사람의 생명이 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철도노조 간부들이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들이 오가고 있는데 노사 중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짚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련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짚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 부는 파업 이전부터 노사를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고 파업 자체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 파업 이후에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노조에는 불법파업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 알린 바 있습니다. 또 철도공사 측에서도 노조 측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를, 그렇게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파업의 정당성 관련해 가지고 노사가 첨예하게 지금 해석을 달리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파업 이후였는데, 파업 이후에는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것은 없으시지요? 그런 편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 부에서도 같은 형태로, 지금 파업이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파업에 대한 견해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파업했을 때 사법부에서 고법까지 다 무죄를 받았습니까. 직위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불법이나 합법이나는 아마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겠지만 어쨌든 불법이든 파업이든 간에 국민의 생명, 안전, 불편,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정당성의 문제를 지금 따지기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어제 15일 오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주제로 정부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셨지요. 고용노동부도 차관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참석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회의에서 노조와의 중재안 또는 계속되는 열차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논의가 있었는가요? 내용이 있으면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직접 하셨으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정확하게 뭐라고 발표문이나 이런 데는 실리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관과 또 국무조정실장께서 이 대책을, 여러 가지 수송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산업안전 문제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니, 그런 말 말고 무슨 정확한 대책 같은 내용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안전만 포커스 해서요?

○**한명숙 위원** 안전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을 텐데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서면으로 어제 만들지는 않고, 어제는 곧 예정되어 있는 사장 호소문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얘기가 있었고 각 분야별로, 주로 수송과……

○**한명숙 위원**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핵심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 보고서가 너무나 하나마나한 겁니다. 이걸 뭐 다 우리가 알고 있고 신문에 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성의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직위해제가 794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8000명에 가까운데 직위해제 이것은 징계입니까, 징계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징계조치는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징계가 아닌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직위해제 직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도 못 받고요,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고 무사고 경력도 삭감되고, 직위해제가 석 달 안에 철회되지 않으면 직원은 면직처분 대상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징계위 절차도 없이 지금 회사가 부당 징계를 남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위해제는 지난번에, 2006년과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인데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에서 모두 전원 무죄판결 받습니다. 징계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대로 징계는 아니고요, 직위해제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경영진에서 내리는 제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텐데 현재까지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명숙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해결의 기미가 없네요. 앞으로 얼마나 사람이 죽어야 될지, 위험에 처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다음,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 먼저 철도 전에, 내주면 우리 당진 현대제철을 가는데 별도로 본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철도노조 파업이 집회를 하면서 파업합니까, 아니면 산개파업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집회를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개파업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파업이 산개파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이번 파업을 보면서 2003년 참여정부 첫째에 불과 세 달도 안 돼서 철도파업에 들어갔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 모여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 한 가운데 당일 날 집회에, 모인 장소에 사실상 공권력이 투입돼 가지고 해산하고, 어쨌거나 파업이 조기에 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저는 오늘 과거 선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철도 안전 문제, 비조합원은 비조합원대로 사고가 날 수 있고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이상 조기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노동부가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빨리 해소해 나가는 노력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견해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부 입장으로는 어떤 상황이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노사가 정말 대화로 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게 5대 요구사항을 가지고 정부 측에서 다시 원점에서 하기 힘들다라고 보면 대화는 매우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편 안전도 안전이지만 우리 물류 쪽의 손실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파업의 조기해결 문제는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빨리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민간회사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류 쪽에서 이미 수출에도 지장이 날 정도로 나오고 있다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조기에 파업을 종식시키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함께, 그것이 불법이든 정당이든 나중에 사법판단도 따를 테니까 어쨌거나 조기에 복귀를 하게 하고 파업도 접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정말 더 이상 국민이, 산업계에서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제가…… 파업의 해소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지만 이번 철도파업은 가장 빨리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노동부가 좀 대처를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견해를 한번 쥬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미치게 될 여러 가지 국민 불편이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은 아마 노사도 원치 않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는 일단 노사가 접점을 찾고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기에 마칠 수 방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이완영 위원** 지금 ‘목적상 정당성 없는 파업’ 표현을 썼는데 절차적으로 보면 이게 임금교섭 과정하고 겹쳐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원 판례라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으로 보는 것도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좀 신중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파업의 주된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모두가 다 알 듯이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은 명시적으로 노동조합도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보통 경영상 요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항상 임단협을 통해서 불법을 피하는 것을 노동조합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하시면서 노동부에서 조기 타결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철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용자 측의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은수미 위원** 사용자 측의 직위해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당하나 정당하지 않느냐는 나중에 아마……

○**은수미 위원**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해야……

○**은수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직위해제라고 함은 일종의 인사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징계위원회 회부와 징계의 수순을 밟는 인사명령으로 통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9년 당시 2000명 정도의 파업 참가자들을 직위해제를 했을 때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것의 4배가 되는 8000명에 대해서 아주 순식간에, 동일하게 판례까지도 다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노동부장관께서는 판단 유보, ‘모르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노동부장관께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 회신에 쟁의행위 관련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답변하셨더군요.

2013년 12월 11일-며칠 안 됐습니다-‘귀 질의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면 입을 닫아야지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주장 같이 어찌고저찌고 하면 쟁의행위로 정당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아주 신속하게 사용자 측 편을 드는 질의 회신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같은 날 5개 부처 장관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

셨어요. 담화문 내용을 보니까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가 ‘초강력 외주화’ 이런 성명서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정부 정책이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용자 측의 아주 신속한 직위해제는 판단 유보,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질의 회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불법이다’ 그리고 5개 부처 장관 담화문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고용부는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고용부는 명확하게 한국철도공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부 정책이고, 그것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여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니 불법이다, 그걸 가지고 노동3권을 제한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사실이잖아요? 이걸 팩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직위해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들이기는 한데……

○**은수미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쭙어 봤습니다. 직위해제에 대해서 판단 유보를 했으면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황을 모르면 판단 유보를 했어야지 일관되지요. 아예 질의 회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질의 회신을 한 그날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아니, 최소한 적어도 고용부면 판단 유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부 담화문 발표하고 노동부의 질의 회신한 답변하고는 직접 연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은수미 위원** 연관이 없어요? 고용부가 질의 회신했는데 연관이 없어요? 장관님까지 포함한 5개 부처 장관이 12월 11일자 대국민담화문 전문을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12월 11일자 질의 회신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사실은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전지방고용청은 아예 12월 10일 자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직위해제 사용자의 명백한 불법이 의심되는, 혹은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는 그런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를 하시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파악 못했겠지요, 지금 좀 전에 산개파업인지 뭔지도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그렇게 신속하게 답변하시는 놀라운 고용부와 고용부장관님이 계시면 한국의 노동권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아니,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4일 날 프랑스에 가서 철도와 공공 부분을 개방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그것 다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건 알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 홍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선 지금 철도파업으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과천에서 80세 된 분이 안전사고로 사망을 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지난 11일에 전북 완주 삼례역에서 대체인력의 신호 오인으로 열차 충돌사고가 일어날 뻔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11일에 또 대체기관사가 경인전철역인 송내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있고, 노조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의하면 ‘대형사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격이 없거나 미숙련된 이런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필수공익사

업은 사용자가 정의행위기간 중에 필수요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관사 훈련을 받고 있는 교통대학 283명의 전동차 승무원들은 저는 명확히 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 철도청의 대체인력 투입은, 적어도 교통대학의 학생들은 취업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강제로 투입하는 것이고 더구나 교통대 학생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명살상이 예상되는 이런 업무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제가 지금…… 일단 말씀하신 15일에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매우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우려를 같이 하고요.

현재 제가 보고받은 거는 대체 투입된 열차 차장이 1학년생인데 열차 차장은 철도공사 규정상 100시간의 실습과 교육을 거치면 현장투입이 가능하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충족 여부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체인력 투입이 그렇게 미숙원이거나 그런…… 이렇게 학생들을 투입함으로써 해서 대형사고가 예상된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홍영표 위원** 저는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책무가 고용노동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노동조합 측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사측에 의한 이런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파악을 안 하고 철도청 보고만 받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를 조사하시

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영표 위원** 사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불법적인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 보겠는데,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안대책협의회’라는 게 대검 공안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 더 드리세요.

○**홍영표 위원** 대검 공안부가 중심이 되어서 공안대책협의회…… 아마 노동부도 참가하지요? 오늘 회의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공식적인 확인을 했고. 누가 고용노동부에서 참석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아직 관련해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왜 모르세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회의 한다고 신문에 다 났고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사협력관이 다녀왔다고 그러합니다.

○**홍영표 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오늘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 공안대책협의회라는 게 독재정권 시절 때 노사의 자율협상을 방해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거에 공안 관계기관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의 명백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앉아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해고시키고 구속시키고 이런 거 논의하는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용노동부는 거기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 간에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고용노동부라고 생각합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저는 독재정권 때의 관계기관회의의 명백한 부활이라고 보고 거기에 고용노동부가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업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노조도 근본적인…… 파업의 목적에 정당성이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할 게 아니라 가능한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노사가 자리에 앉아서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검 공안부가 주도하는 회의에 가서 고용노동부는 받아적어 와 가지고 검찰의 요구들을 실행하는 부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과거에 독재정권 때 했던 거예요. 그 회의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공안대책협의회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봉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7월 13일, 8월 24일, 10월 26일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때 노동부가 그 요구 내용이나 명확하게 파악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최봉홍 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7차례 임금교섭을 하고 결렬이 되어 가지고 11월 12일에 노조가 중노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11월 27일에 중지됐습니다. 이때 요구사항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영화 문제하고, 임금인상하고, 해고자 복직, 손배, 징계 그다음 나왔던 사항이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노조·정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이 네 가지 요구가 이번 파업

에서 1차 나왔던 요구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요구와 같았습니까, 중노위에 넣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그 사항들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최봉홍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봉홍 위원** 그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중노위에 넣었을 때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노사정책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노위에…… 그 당시에 노사 간 교섭에 있어서는 임금 문제와 함께 현안 문제도 논의가……

○**최봉홍 위원** 민영화 문제가 대두됐었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예, 논의가 되었는데 다만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 있어서는 임금이나 교섭대상 중심으로 논의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진행이……

○**최봉홍 위원** 중재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조정 중지가 됐었습니다.

○**최봉홍 위원** 조정 중지가 됐었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예, 조정 중지가 된 거는……

○**최봉홍 위원**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당시에 임금이 핵심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그러면 지금 내걸고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은 그때의 네 가지 사항이 아닌 게 현재 나와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그렇지요.

○**최봉홍 위원** 이사회 결정 철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거는 아닌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철도파업의 배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두로 하겠습니다.

이 파업 문제는 지난 9월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철도노동자대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때 가지고 10월 2일에 도쿄에서 열린 세계철도노동자대회에서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방침이다' 이래 가지고 대책을 세워라, 이게 같이 결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그 내용, ILO나 그런 데 통해서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최봉홍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봐 가지고…… 며칠 전에도 네 사람의 국제노동단체 대표가 왔었고 지금도 두 사람이 한국 내에 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들 둘이 주장을 해 가지고, 세계노동단체의 총장이 교체되는 기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난 뒤에 보더라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다섯 가지 문제입니다.

제가 철도노조 간부들을 만나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민영화를 중지해 달라', 이게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도 내거는 소리가 '세계철도노동자와 같이 하겠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코레일 측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저께 사장이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민영화가 아니라면 노동부가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노동조합이 인정할 수 있도록 '민영화가 아니다' 하는 믿음성이 가는 그런 보장 장치를 취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소관부처하고 또 철도공사에서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사람이 죽고 이러는 사고가 납니다. 파업 나면 사고 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생각한다면 다소 전체 화합을 위해 가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사회 결정 문제, KTX 면허 발급 중단, 철도발전소위 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 고발·직위해제 철회, 이 내용 중에 한 서너 개라도 만들어 가지고 '협상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정부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까 처음 말씀드린 네 개는 세계 122개국에서 한국

정부로 항의서한이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정치인지 뭔지도 모르도록 해서 안을 만들어 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에 있는 같은 조직이 강하게 항의를 해 놨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도시운송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 항의공문을 보내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넘겨 봐 주십시오.

거기의 리더가 일본의 맥 우라타라고 한국하고 반대 정서를 가진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총 리드하고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다키라는 사람하고 들어서.

그다음 거 봐요.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던 공문들, 서한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모르는 스티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 완전 민영화' 해 가지고 전 세계 각국에다가 뿌리고 있는 저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끝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파업한 것이 불법이고 뭐고 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판단이고 우선은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를 털어 놓고…… 노조위원장은 철도공사 사장이 만나 준다 합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만큼 문제가 커지고 국회에서 이만큼 문제가 나왔으니까 장관님이 중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쪽에 대비…… 그 대신에 보안조치를 철저히 해 가지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건 국민이 원하는 거는 파업이 조기에 마쳐지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노사가 다시 한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는, 12월 12일에 노사가 진전 없이 실무교섭을 깬 수밖에 없었던 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노조에서 이거는 민영화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원론적인 것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을 자꾸 주장을 하니깐 실제로 다른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계제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봉홍 위원** 둘은 안 되지만 노동부장관님이나 다른 장관이 같이 보증을 해 가지고 ‘아닙니다’ 하면 믿을 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위원님 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장관님, 과천청사역 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던 철도대학생이 무자격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아직 파악을 확실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실무자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혹시 국장들 중에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조사를……

○**심상정 위원** 아니, 왜 그거를 국토부에서 조사를 합니까? 노동부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요? 대체인력이 적절한 자격자인지 아닌지, 그거 어디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이렇게 무자격자를 마구 대체인력으로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고용노동부 소관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에 대해서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런 자리에 투입된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아직 노동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제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서……

○**심상정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대체? 지금 파업 들어간 지가 며칠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체 대체인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대체인력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불법적 판단, 합

법파업이나 아니냐도 있지만 대체인력이 유자격자냐 아니면 자격이 없느냐 이거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개별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파악이 못 된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심상정 위원** 저는 이거는 노동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에 노동부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불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이완영 위원님, 직접 노동부에서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를 많이 다뤄 보신 분이예요. 그리고 2009년도 철도파업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비슷한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판결해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요? 일부 빼고는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최종 판결은 안 났습시다마는…… 노동부가, 노동법에 준해서 노사관계 문제를 판단해야 될 노동부가 그냥 다른 부처하고 부화뇌동 되어서 불법파업이라고 바람 잡고 또 기자회견하고 엄벌하고 그런 위치에 서서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적어도 노동부는 노동법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공포정치로 몰아가면서 정당한 요구를 무지막지하게 막아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노사관계의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노동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에 뭘 하셨어요? 하신 게 뭐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동안에 파업 전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무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체근로자 자격 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내부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그 자격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다 자격이 없는 규정상 자격 미달자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고용노동부가 파악을 해서 당장 대체인력을 중지시키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파업이라고 하면 애당초 조정 절차는 왜 거쳤습니까? 불법이라면 그것은 아예 조정 대상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사안이 임금 교섭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부분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체교섭 대상도 되고 파업도 합법이다 이렇게 계속 판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2009년 철도파업의 사례를 모르지 않을 노동부에서 이것을 파업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파업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철도노조를,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런 식으로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제가 법리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고용노동부만큼은 법리적으로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처가 불법이라고…… 거기에 등 떠밀려 가지고 그래서 근거나 사실도 맞지 않는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을 어떻게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합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노조가 ‘17일까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불법·합법 여부는 그 이후에 법원에서 다루어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께서 노조가 대화하자고 하는 마당에 정부가 거부하고 불법으로 몰아가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러니까 노사관계가 정상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심상정 위원님 발언 중에 지금 공포정치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심상정 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이완영 위원** 저는 이 환노위에서…… 공포정치라는 것은 현 집권여당을 얘기하겠지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듣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김경협 위원** 대통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 말씀 끝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완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 힘들 정도의 용어와 발언을 쓰셨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해명을 듣고……

○**위원장대리 김성태**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완영 위원** 예, 해명을 듣고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면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정회하든지 그것을 요구합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뭘 해명을 해야 되지요?

○**이완영 위원** 공포정치라고 표현하신 것이요.

○**은수미 위원** 정회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까 바람 잡는다, 공포정치 이런 부분은 좀 정정할 용의 없습니까?

○**심상정 위원** 정정할 용의가 없지요. 제가 지금……

마이크 넣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이크 잠깐 넣어 주세요.

발언은 딱 그 답변만 하세요. 정정할 용의 없습니까?

○**심상정 위원** 아니, 왜 그 답변만 합니까, 저도 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대리 김성태** 짧게 하세요.

○**심상정 위원**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이완영 위원** 1분만 드리라니까, 1분만.

○**심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합의 없이 민영화 없다’ 이것은 권력자가 하신 말씀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누차 약속한 얘기예요. 그 약속이 파기됨으로

써 파업으로 이르렀는데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을, 그리고 절차를 다 거쳐서 파업에 들어간 노동조합의 대화를 뿌리치고 파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파업으로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지금 체포영장 발부하고, 그게 공포정치지 뭐예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법치이고 법을 넘어서서 권력자가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해서 몰아붙이는 것이 공포정치예요. 그것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방은……

○이완영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완영 위원이 제기한 발언에 대해서 정정할 용의가 없나 이거지요?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여기에 대해 해명을 안 했으니깐 제가 요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만 하세요. 빨리 현안질의합시다.

○이완영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만 의사진행발언……

○김경협 위원 아니,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현안질의 계속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성태 의사진행발언 1분……

○이완영 위원 지금 십 위원께서 민영화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안 거쳤다고 하는데 이미 정부는 분명히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지금 민영화라고 전제를 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박근혜정부를 ‘공포정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것은 빨리 사과하세요.

○심상정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간사님,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제 발언 다 끊고……

○이완영 위원 도저히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회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완영 위원님, 위원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함부로 사과 요청하지 마세요.

○이완영 위원 아니예요, 아무리 정치적 견해도 이것은 여당과 야당 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입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불러 드릴게요, 왜 공포정치인지. 제가 왜 공포정치인지 말씀드릴게요.

○이완영 위원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민주당 정부인데 민주당 정부에 공포정치라 하면 민주당 위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은수미 위원 아니, 저희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의장이 발언권 주지 않은……

○심상정 위원 회의 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은수미 위원 나가세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조용히 하세요.

○은수미 위원 우리는 현안질의를 할 테니까 나가세요.

○김경협 위원 현안질의해야 되니까……

○은수미 위원 나가십시오.

○김경협 위원 우리는 현안질의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감사합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공포정치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답화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위원장대리 김성태 주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이번 기회에……

○이완영 위원 아니, 발언을……

○위원장대리 김성태 저기 발언 좀 넣어 주라니까.

○이완영 위원 사과를 하시든지……

○朱永順 委員 끊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이크 넣었어요.

○심상정 위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朱永順 委員** 오늘로서 8일째 철도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심상정 위원은 조용히 하세요.

○**심상정 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朱永順 委員** 오늘부터 KTX와 수도권 전철이 감축 운행되는 등……

○**이완영 위원** 어쨌거나 공포정치라고 표현하면……

○**심상정 위원** 그런 게 공포정치지 뭐예요, 협박하는 것이지. 문제 삼을 것을 삼으셔야지.

○**朱永順 委員**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에 큰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현안질의 끝내고 공포정치에 대한 얘기 별도로 하자고요.

○**朱永順 委員** 철도노조 파업은 2002년 이후 일곱 번째 파업입니다. 당장 30%대로 추락한 화물 운송률 등 경제적 피해는 다음이고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갖가지 사고가 속출하는 등 국민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젯밤 대체인력으로 철도대 대학생이 투입돼 운행하던 코레일 전동열차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제에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차관 회의가 있었는데, 장관님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명백히 불법파업이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은 이미 통보도 했습니다. 명백하게, 아주 면밀하게 해서 철도산업 발전 방안 추진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입니다.

○**朱永順 委員** 노조 등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그런 주장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목적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朱永順 委員** 장관님, 파업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수서발 KTX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주무장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건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내놓은 것 또 철도공사에서 설명한, 공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민간자본의 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민영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朱永順 委員**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은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관 등에 지분 참여를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했고 철도공사가 41%의 지분을 유지해 정관 개정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더욱이 국회 국토교통위는 아예 법으로 민영화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사실 이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이유가 어찌 됐든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부채규모가 17조 6000억 원, 부채비율도 400%가 넘는 부실한 공기업의 직원 평균연봉이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에 앞서 자연승급분을 포함해 8.1%의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명분도 근거도 없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하라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법적으로나 국민정서로 설득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경제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파업을 풀어야 합니다. 정부도 불법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처해야겠지만 장관님께서도 노조와의 대화와 협의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 등 강경대처는 결국 노조와 정부에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철도노조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시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했습니까?

○**朱永順 委員**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 다음에 장하나 위원 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철도사고가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 대체인력이 한국교통대학교 1학년, 그리고 현장실습으로 돼 있습니다. 그 학생의 자격 여부는 아까 질의가 있었어요.

현장실습을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투입해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현장실습인가요,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알기로는 현장실습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현장실습으로 돼 있는데 현장실습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해도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원론은 제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해당 학생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더 파악을 해서……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실습 전에는 7일 전에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지요? 이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알고 계시는 게 없는 것인데, 파악도 잘 안 하고 계시고. 현장실습인데 현장실습 계약도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조사를 노동부에서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지금 저기 하는데요, 현장실습을 이런 식으로, 직업능력 개발이나 현장 적용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학교단위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파업의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부터가 문제이고요. 그리고 현장실습인데 그런 계약도 체결하지도 않았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투성입니다. 불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동부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 얼마만큼 조정·중재 역할을 했는지 파악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사실 방법이 있지요, 제도적으로 현재 보장이 돼 있는 방법이.

사후조정제도 이것을 활용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후조정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의 파업 목적 자체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조정제도를 저희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안들은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김경협 위원** 사후조정제도는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요. 지금 한 번이라도 이것을 시도해 보든지 아니면 이것이 불법·적법의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조정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어떤 방법이든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경협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노사 간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노동부가 처음부터 사측의 입장에 껍싸게 서 가지고 사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과연 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노동부가 지금 적법·불법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철도파업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사법부의 판단은 구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왜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나중에 생기게 되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예전에 파견 문제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항상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만이 알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장관님이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

금 파업의 목적상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지금 적법인지 불법인지 사법부의 판단도 구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경협 위원** 단지 그것은 노동부의 의견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의견인데 이게 불법인지 적법인지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된 것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지 않았습니니다.

장관님이 여태까지 파견 문제는 계속 적법이나 합법이나 다 사법부에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왜 안 물어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노동부!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님, 답변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항상 문잖아요, 노동부에다가. 물으면 노동부가 관례적으로 항상 해석을 해 주고 관계부처에 지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 대통령이 계신데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은수미 위원은 조용히 보세요.

○**은수미 위원** 아니, 지금 이완영 위원도 말씀하시잖아요.

○**김경협 위원**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하니까 내가 행정부보고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데 뭘 물어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고용노동부장관님 답변 정확하게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완영 위원** 당연히 노동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명숙 위원** 진정시키세요. 발언권 받아 가지고 하라 그러세요.

○**이완영 위원**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답답해서.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님은 여의치 마시고 답변하시면 돼요.

○**朱永順 委員** 소신껏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동안에 진행된 경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모두가 알듯이 지금 현재 철도노조가 내세운 여러 가지 파업의 목적이라든지 구호 그다음에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면 명백하게……

○**은수미 위원**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완영 위원** 뭐예요! 왜 끼어들어!

○**은수미 위원** 12월 11일 질의 회신에서……

○**이완영 위원** 왜 끼어드냐고, 왜!

○**은수미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한 다라고 그렇게 질의회신 하셨어요!

○**이완영 위원** 아니, 왜 끼어드냐고, 답변하는데!

○**은수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님 계속 답변하세요, 빌미 주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기본적인 경영권을 제한하는 불법파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 12월 11일자 질의 회신에서 공문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신다고!

○**위원장대리 김성태** 은수미 위원은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은수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다 판단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 여소야대 상임위라고 말이에요, 사회 보는 사람 말도 안 듣고 이것 큰 문제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파업의 정당성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반복해 드리면 종합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성태** 앞으로 은수미 위원은 발언, 주의 줍니다.

조용히 하세요.

○**은수미 위원** 사람의 목숨이 죽고 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번 파업은 파업의 목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종합적인 상황 판단 그리고 그동안의 법원 판례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한 것이고 법적인 판단은 나중에 사안이 떠오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지금……

○홍영표 위원 질의하다가 이완영 위원님이……

○위원장대리 김성태 잠깐만요.

○김경협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  
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여야 간사 간에 사전 양해  
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셔야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차관은 예결위 소위 참석  
을 위해서 잠시 이석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관련  
국장도 같이 배석하여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님……

○김경협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 더 드리세요.

○김경협 위원 제 질의하다가 어떻게 이렇  
게…… 참, 제 질의시간이었는데 이게……

장관님,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이 근로자의 고  
용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  
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서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김경협 위원 회사의 분할·합병은 근로조건에  
무조건 영향을 미치지요, 고용과 근로조건에. 미  
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  
할·합병이 다 미치지요. 이게 임금·근로조건에,  
고용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용에 영향을, 직접  
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만약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를 분할한다 그러면 이게 고용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원론적인 질문에, 말  
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철  
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KTX 자회사  
설립은 근로조건에 변경과는 직접적인, 현재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자회사를 설립을 하면 거기에 지  
금 현재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  
소속이 바뀔 텐데요, 고용이 바뀌고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는, 특히 정부, 국토부하고 철도공사 측에서  
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런 과정  
상에서의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중재를 해서 그런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  
다.

○김경협 위원 이번 이 철도파업의 문제는 처음  
부터 좀 잘못 꼬인 게요, 철도산업에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철도산업이 경  
쟁체제가 도입이 됩니까?

저는 이 철도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간산업  
이고요, 공공재입니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독점  
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철도 내부에 경쟁체제를 하면 어디와 어디가 경  
쟁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 회사를 자회사로 몇 개로 분할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분할하는 게 경  
쟁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철도경쟁체제라  
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꼬인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 잘못 꼬인 것이고, 여기에 의해  
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파업에 들어가는 이게  
적법한지 불법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제가 저  
번 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가지 기준이 있  
습니다. 주체와 목적·절차·수단인데……

○위원장대리 김성태 보충질의에서 하세요, 그  
러면.

○김경협 위원 주체와 절차·수단 다 합법적이  
고, 목적에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판  
단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  
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장관님은 이것  
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거에 죽 해서 판례나 그다음에 이게 고용과 근



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노동부에서 그렇게 이것저것 안 따지고 처음부터 그냥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하세요.

○김경협 위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노동부가 나중에…… 이것 나중에 ‘합법파업이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노동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경협 위원 아니, 이 답변까지……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이 답변까지 들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 좀 그만 해요, 그만 됐어요.

○김경협 위원 아니, 나중에 사법부에서 합법으로 만약에 판결이 떨어졌을 때……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때는 장관 책임져야지, 뭐.

○김경협 위원 노동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일단 답변을 듣고 하셔야지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때는 장관이 책임진단니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수미 위원 장관 끝날 겁니다.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한 달 전에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 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장하나 위원 그리고 노동부가 항고를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장관님이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이 일단 1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판결을, 사법부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행정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때 많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노조 아님 통보라는

게 사실 근거도 취약하고, 그러면 이제 ‘법도 없 이 장관 또는 행정부가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부 의지 따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냐’ 우려가 많았는데 사법부에서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 간단히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철도노조에서 벌어진 일하고 일맥상 통하고 있고요, 아까 공포정치라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표현에 또 이완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정색을 하셨지만, 법치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또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완영 위원 어느 시대인데 지금 경찰…… 아, 나 진짜 오늘 열 받아서 회의 못 하겠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이완영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무슨 정회입니까, 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는 노조 아님 통보 자체도 정부가 책임 있게 법과 원칙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정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상급법원의 판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그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전에 어떤 법률전문가라든가 충분한 자문을 받았는데도 그런 무리한 행정명령을…… 제 기준에 무리한 것이니까 그것은 표현을 좀 수정하자면, 노조 아님 통보를 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도 1심에서 그렇게 재판부가 노조 아님 통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검토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집행정지를 인용한 판결의 요지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하나 위원 아, 시정명령은 적법한데 그렇다고 노조 아님 통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시다시피……

○장하나 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충분했는지 정도 좀 얘기해 주세요, 2분밖에 없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는 충분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하나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시다시피 집행정지 인용은 본안과는 상관없이 판결을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안 심의에 들어가면 저희 정부의 입장들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다 한 후에 혹시 부족한 바 있으면 즉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철도에도 불법파업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충분한 검토 하신 것이지요? 자신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그다음에 판례, 판단,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봤을 때 저희들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그러면 오늘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수석비서관회의인가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민영화가 아닌데도 민영화 반대 투쟁하는 것 명분이 없다 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자기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집단행동이다, 민영화와 같은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노동부가 바라보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시각과 대통령의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관님께서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조의 입장은 이 민영화 부분, 그러니까 ‘수서발 KTX 설립신고를 국토부에서 안 받아준다고 한다면 내년 임금인상까지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것인지, 노동부가 지금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것처럼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인지…… 이런 정부 입장의 조율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임금인상이라든가 아주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파업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민영화는 명분이라고 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대통령님 대수비 말씀은 지금 직접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들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대통령님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평가를 내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철도파업의 위법성 여부는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임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민영화만 안 한다면 내년 임금인상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대통령께서 자기 이익 실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다면 노동부가 청와대에 제대로 한번 보고를 하셔서—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좀 알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 말씀드릴 것은 2009년에 벌써 직위해제가 부당한 징계였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지금 코레일 측에서 당시 2000명 규모라면 지금 8000명까지 4배 이상, 아주 제가 보기에 과도한 직위해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판결이 났던 것이고 그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직위해제기 때문에 ‘코레일이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 한다’ 저는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용부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위해제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쟁의행위의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지만 그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부 차원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우려를 잘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최소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장하나 위원 노력한다는 말씀 좀 크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불법인 것을 이렇게 규정하실 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입장이고요. 그게 부당노동행위다 아니더라고 해 주는 것이 또 아주 중립적인 노동부 입장을 오해받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처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뒤에 부분 잘 이

해를 못 했습니다. 마지막……

○**장하나 위원** 아까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근로감독관들 많이가 계시잖아요.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조치도, 불법파업이다 규정하신 것, 오늘 좀 빨리 조속히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까만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김성태**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보충질의를 주셔야지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오늘 현안질의하시는데 무슨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 보충질의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것은 정책질의도 아니고 현안질의예요.

○**은수미 위원** 현안질의에도 보충질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충분하게 오늘 하셨는데……

○**은수미 위원** 보충질의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한 3분씩만 더 하시지요?

○**은수미 위원**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현안이에요? 보충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질의의 보충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먼저……

○**심상정 위원** 가신다더니 안 가셨어요?

○**이완영 위원** 지금 계속하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요. 제가 아까 먼저 발언, 순서가 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여기서 보충발언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시간은 3분씩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당진제철소 아시는 실무자 누가 있어요? 국·과장 중에 아무도 없어요?

장관님, 당진제철소 관련해서 지금 가동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11월 27일 날.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1개월 가동중지 내렸는데요.

빨리 실무자, 실장이나 국장님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국장 나와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스발전을 시키는 데 연료비가 하루 3억 원, 가동중지시킴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 6억 원 손실이 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국장님?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비용이 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당진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배출량 CO<sub>2</sub>가 이것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금 가동을 중지하니까 그냥 배출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소각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 배출되면 환경문제 발생 안되나요? 소각을 해도……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그냥 배출하면 유해하기 때문에 태워서 소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소각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물론 그것은 환경부 업무입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쭉 보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일단은 산업안전 문제는 문제라도 이게 공사가 다 돼 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데 하루 6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이것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노동부 가동중지명령으로.

이제 한번 빨리 조기에, 저도 알지만 반드시 1개월이다 이게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완영 위원** 그래서 해소가 되면 중지명령을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안전문제는 안전 문제대로 가동은 가동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판단 해서 빨리 에너지가 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산재 예방보상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발생한 이후, 11월 26일 날 사고가 났는데 그 즉시 5, 6, 7, 8호가 지금 작업중지가 됐고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안전진단팀이 들어가서 조사 중에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 위원** 제가 안전점검이 완료됐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완료됐으면 가동중지는 풀어 줘도 될 거다, 이것을 검토를 빨리해 가지고 빨리 5, 6, 7, 8호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필요한 조치가 완전히 끝났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박종길 국장님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 정확하게 3분 좀 지켜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 이후에 오늘까지 지금 8565명에게 직위해제 통보를 했어요.

위원님 어디 가세요?

○**이완영 위원** 제가.....

(웃음)

○**심상정 위원** 제가 왜.....

가세요.

(이완영 위원 퇴장)

8565명 직위해제가 됐어요. 파업현장에서 나오는 족족 직위해제를 때렸어요. 그다음에 업무방해 고소가 190명이예요. 노조간부 10명이 체포영장 청구됐고 공안대책협의회가 2011년 FTA 반대시위 이후 처음으로 지금 개최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이런 파업에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원래 법치라는 것은 정약용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민들에게 쇠망치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파업의 어떤 명분이 기본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또 이 철도 민영화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다 인정했던 바고요.

다만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형태를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법과도 충돌된다는 것을 철도공사가 법률 자문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들 지금 74%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자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이게 철도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답변에 54%가 이것은 민영화라고 국민들도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법적으로도 지금 타당성이 충돌이 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을 그냥 민영화라고 강변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리고 노조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징계하는 이런 것이 능사냐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조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이게 민영화인지 아닌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해서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 철도의 방향을 잡아 나가자, 너무나 중요하고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모든 대화를 끊어 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례없는 그런 탄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고용노동부가 적어도 노동 문제에 관한 법적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17일까지 예고돼 있는데 대화에 나설 것

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권력 투입 얘기도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지금 공권력 투입이 예정돼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어쨌건 노사가 무엇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또 공기기업으로서의 철도공사가 어떻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현재 파업을 조기에 종식시킬 것인지 정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말씀하신 대로 노사가 대화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17일까지 대화를 주선하시겠습니까, 17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철도 민영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면 19명, 해임 1명, 정직 1명이 된 적이 있고 2003년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반대에 따른 반대시위로 파면 18명, 해임 7명, 정직 15명이 됐고 8000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들어는 봤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624명이 직위해제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다음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도에, 이때 아마 이철 사장님 때일 것입니다. 직위해제 2730명 했지요? 그다음에 노조간부 및 적극 가담자 징계는 파면 6명, 해임 3명, 정직 55명, 감봉 109명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

만 1588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에 169명이 해고된 적이 있지요?

철도는 이 민영화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면 이렇게 대규모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철도 민영화 문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대규모 시위가 계속 보시면 각 정부마다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때의 경험이 있을 텐데 지금 이번에 여기에 대비해서 이런 준비들을 해 놓으신 게 특별히 없더라는 게 이게 좀, 고용노동부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아쉽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간에 아까 말씀드린 철도발전법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관련 부처들하고 짜 왔고요. 발전계획에 저희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업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고용노동부는 이것이 파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이게 다 직위해제를 했는데 이때 법적 검토들을 다 안 받아 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애매한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들이 축적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때 굉장히 복잡한, 직위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한두 가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파업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동안의 정황 그다음에 노조가 내세운 파업의 목적 그다음에 판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을 잃은 불법파업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용교 위원** 2005년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

면 확고부동하게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직위해제 하는 부분이라든지 세세하게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즉 직위해제 한 것이 2002년부터 크게는 수천 명씩 몇 차례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법원의 판례도 그렇고 이후에 또 더 법적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기를 바랐던 거고,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분쟁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들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2002년, 2003년, 2006년도의 직위해제는 왜 합법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용교 위원** 지금 행정법원의 판례라는 건 2009년도에 있었던 파업이지 않습니까? 파업에 대해서 직위해제 한 것을 행정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는데, 법적으로도 2003년도, 2006년도 이때도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위법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위해제의 위법성 여부는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03년, 2006년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사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해당되는 요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용교 위원** 알겠습니다.

파업으로 생긴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분입니다.

**○은수미 위원** 몇 가지 점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국토부에서는 철도산업에 대한 계획을 잘 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마 고용부의 주요한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확인입니다. 12월 11일자 대국민 담화문 전문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입니다’라는 문서를 주도한 것은 고용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문서……

**○은수미 위원** 한 쪽짜리 문서입니다, 대국민 담화문. 이 판단은 고용부가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불법 파업이라는 판단……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실무자가 좀 대답을, 자세한 문서……

**○은수미 위원** 아니요, 팬찮습니다. 제가 문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 쪽짜리.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부가 판단한 겁니까, 아닙니까만 답변해 주세요.

5개 부처 장관 대국민 담화문 전문, 그중에 한 쪽짜리의 반이 불법 파업이라는 얘기에요. 이건 고용부가 하셨겠네요, 적어도 이 문서의 반은? 누가 작성하셨느냐고요, 이것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은수미 위원** 대답을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이, 질문이 ‘담화문을 누가 작성했냐?’ 그 질문이세요?

**○은수미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가 중요하게 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 계획을 하는 거니까, 불법 파업에 대한 판단은 고용부가 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하신 담화문은 국토부가 작성을 하고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하면, 고용부가 그것을 ‘예’ 이렇게 확인해주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건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의 반이 파업에…… 아니, 거의 전부가 파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주도하셨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작성은 국토부에서 한 겁니다.

○은수미 위원 그리고 고용부가 ‘예’ 하고 답변해 주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용부도 정부입니다. 관련된 정부로서 들어가서 한 것이고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 ‘예’라고 답변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불법 파업, 아까 질의 회신처럼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 고용노동부는 12월 9일 날 철도노조에 공문을 발송했고, 12월 11일 날 철도공사에는 공문 발송을 해서……

○은수미 위원 고용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철도노조의 파업이 목적상……

○은수미 위원 고용부장관님! 제가 질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임을 이미 알렸다는 겁니다.

○은수미 위원 고용부장관님! 제가 질의한 건 12월 11일자 5개 부처 장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을, 그 내용이 ‘불법 파업이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가 작성했노라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담화문의 내용 전체를 국토부가 작성한 겁니다.

○은수미 위원 예, 그러면 고용부는 뭐 하셨습니까? 이 내용 전체가 지금 불법 파업에 대한 내용인데, 원래 그거 판단은 고용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수미 위원 국토부가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러니까 11일 날 담화문을 발표한 거고……

○은수미 위원 예, 5개 부처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전에……

○은수미 위원 아니, 제가 그 전을 말씀드리는데 아니고요, 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담화문의 요것만, 제가 그 전, 그 후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담화문이 어쨌든 국토부가 한 거라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까 수서발 KTX 자회사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안 끼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런 답변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고요……

○은수미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수미 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건 어디에 근거하고 하셨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대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은수미 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본……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관련이 있을 만한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을지 않습니까?

○은수미 위원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 보셨습니까? 이 출자계획만 보면요, 거기 코레일이 연평균 1078억 원 순손실 예상하고, 그래서 수서발 KTX를 별도로 만들면 자산입대 수입, 차량정비 위탁 등 연평균 2096억 원 수입 예상되며, 일부 직원 전직 등 인력 효율화 기대하고, 심지어는 ‘초강력 외주화’라는 메시지까지 발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근거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

○은수미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서발 KTX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위원님, 자회사 만드는 것 자체는 경영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임금 및……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근로조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 가서 따져 보면 될 것입니다.

○은수미 위원 ‘임금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

칩니까, 안 끼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그랬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끼칠 수도 있고 안 끼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

○**은수미 위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이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계획서 보고 실제 집행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당연히 노동자들이 보지요.

고용부장관께서도 노동자이셨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은수미 위원** 노동연구원 인력 구조조정 계획 이런 것 나오면 계획 먼저 보고 노동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영향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장관 됐다고 바뀌시는 거 놀랍긴 한데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은수미 위원** 좀 이런 계획이라도, 그 문서라도 좀 보시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영향 없다’ 이렇게 고용부가 대답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분 안에 마쳐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철도산업의 발원지이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철도를 자랑하던 영국 철도가 민영화를 하면서 후진철도로 전락하고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민영화의 실패 사례입니다.

민영화는 아니라고 지금 정부는 주장합니다. 물론 믿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루어지는 차량 관리, 수서발 KTX, 시설 유지, 이런 형태로 지금 분할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이 분할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혀 국민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할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한전의 분할로 인해서 발전과 송배전 분리시키면서 한전의 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철도산업을 분할할 경우에 또다시 코레일은 더 큰 부채, 아마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철도산업에 있어서 경쟁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흑세무민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분할이 경쟁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무엇과 무엇이 경쟁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경쟁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분할, 합병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번 철도 파업의 목적이 회사 분할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임금 요구를 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회사 분할이, 민영화가 불법이다, 그러면 임금에 대한 요구는 합법인가? 분명히 내부에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싸 묶어서 ‘전체적으로 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무리입니다. 그것은 설령 노동부의 주장대로 그 목적의 일부에 불법적인 요구가, 부당한 요구가 들어 있다고 치더라도 그 파업 전체를 모두가 다 불법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나중에 사법부가 판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만약에 사법부 판단에 있어서 나중에 적법한 파업으로 판결이 될 경우에 노동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안이 떠오르면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토부…… 저희 고용노동부가 철도 관련해서,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경쟁체제 도입 관련해서 직접적인 해당 소관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게 이러니저러니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성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협 위원** 이것에 대한 주 주무부처는 국토부겠지만, 여기에 지금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파업과 관련된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여기의 주무부처는 또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에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목적의 정당성 문제를 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게 실제로 옳으나, 거기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의 판례들로 봤을 때 이렇게 고용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합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파업은 사법부의 판단에서 적법 파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났을 때 지금까지 노동부가 했던 행위들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도 분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노사관계이고 또한 여기에 지금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노동부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몇 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사후조정제도 활용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 활용해서 신속히 파업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근로조건 관련된 쟁의에 관련해서 사후조정제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파업 자체가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기제를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것은 노동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미리 규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이 현재 불법인지 적법인지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후조정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부가 나서서 이 방법을 통해서 파업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 불편, 국민의 우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실습생 대체인력 부분 얘기했는데, 이거 신속히 조사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안전사고 예방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대체인력과 관련된 사용자 쪽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번에 철

도 파업을 보면서 걱정이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지금 금년에 들어서 일련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사상 최초의 노조 아님 통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의 신고서 반려, 그다음에 이번에 철도 파업으로 인한 사상 최대의 직위해제, 190여 명에 이르는 고소 고발, 저는 정말 이게 2013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관계의 현실이고 이게 지금 노동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가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탄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지금 노동정책은 후퇴를 하다 못해서 약 삼십년 전으로 후퇴해서 거의 유신통치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제2의 유신과 여기에 맞는 노동탄압부, 이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동부, 각성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은, 우려는 알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말씀 기조하고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려를 위원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를 공감하고, 어쨌건 이것은 불법 파업이라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그다음의 대안들을 가지고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파업을 종결시킴으로써 노사가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철도 파업이 지금 나라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악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불법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줘서 어쨌든 이 문제가 국민 속에서 더 큰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노동부가 노동부 입장에서 줄 정부 대책회의에서 다른 목소리도 때로는 내서 그게 통과 안 되더라도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서 상황을 파악해 보는 노력이 꼭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정애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른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윤 성 규
환 경 정 책 실 장	백 규 석
물 환 경 정 책 국 장	오 종 극
자 원 순 환 국 장	박 광 석
환 경 정 책 관	이 윤 섭
환 경 보 건 정 책 관	나 정 균

고용노동부

장 관	방 하 남
차 관	정 현 옥
기 획 조 정 실 장	심 경 우
고 용 정 책 실 장	이 재 흥
노 동 정 책 실 장	권 영 순
인 력 수 급 정 책 국 장	신 기 창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종 길
노동시장정책관	임 서 영
직업능력정책관	나 영 돈
고용서비스정책관	황 보 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이 수 영
근로개선정책관	임 무 송
노사협력정책관	박 화 진
공공노사정책관	송 문 현
정 책 기 획 관	김 재 훈
국 제 협 력 관	최 기 동
감 사 관	조 철 호
기상청	
청 장	고 윤 화
차 장	조 주 영
기 획 조 정 관	김 영 신
관 측 기 반 국 장	박 관 영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엄 원 근
지 진 관 리 관	양 진 관